미얀마노동자 고 아웅민우 중대재해 지원모임



미얀마노동자

아웅민우

중대재해 대응
투쟁기록집

2026. 11. 13

죽음에 맞선 연대를 위해

미얀마노동자

아웅민우

중대재해 대응 투쟁기록집

2026년 11월 13일

미얀마노동자 고 아웅민우 중대재해 지원모임

발행일시
2026년 11월 13일

발행단위
미얀마노동자 고 아웅민우 중대재해 지원모임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작성자
권미정, 김다빈, 이용덕, 이정호, 최진일, 하동현

목 차

기록집을 내며 7

1 사건개요 11
1. 사고개요 12
2. 현장의 문제점 15
타임라인 17

2 죽음이 발생하다 19
1.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20
2. 살인적 노동조건 22
3. 지워진 핏자국, 감춰진 머리카락 23

3 죽음이 알려지다 29
1. 첫 만남 30
2.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다 32
인터뷰 유족이자 유족의 곁에서 같이 싸운 “마모” 씨 34

4 죽음에 대응하다 39
1. 지원모임 구성 40
2. 유족 입국과 교섭 41
3. 합의 후 귀국까지의 과정 42

5 남은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다 45
1. 천안지청에 대한 요구 46
2. 재발방지방안 협의 51
3. 합의의 이행과 남은 동료들을 위해 57

6 이어가야 할 투쟁을 위해 남기다 59
빠른 대응, 여러 단체의 모여진 힘 60
동료들과 통역의 역할 61
아내의 결단 62
합의안의 의미와 이행 과정 62
아쉽고 부족했던 지점 63
아웅민우 님에게 64

부록 첨부자료 67
첨부1 공식 문서 69
첨부2 선전물(웹자보) 97
첨부3 투쟁 사진 103

PROLOGUE

기록집을 내며

죽음에 맞선 연대를 위해 아웅민우 님의 투쟁을 남깁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 KTX 건설현장이었던 SK에코플랜트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 님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가져보지 못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였습니다. 노조도 없고 유족도 한국에 없었지만 이 죽음을 묻어버릴 수 없다는 이들의 움직임이 이어졌고 '미얀마노동자 고 아웅민우 중대재해 지원모임'(이하 '지원모임')이 만들어지고, 유족이 어렵게 입국하고, 사측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웅민우 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추모제를 가진 후, 7월 28일 유족인 부인은 남편의 유해를 모시고 미얀마로 출국했습니다. 지금도 현장 동료들의 요구 해결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은 이어지고 있고, 법적 조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 발생부터 유족의 입국과 합의 그리고 출국까지 28일. 짧은 기간의 투쟁이었지만 의미 있는 여러 과정과 결과가 있었고 고민도 남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싸우며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들도 있었고 남은 과제를 확인하고 풀어가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모임은 기록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웅민우 님의 중대재해 대응 과정을 다른 노동·시민사회 단위들과 공유하고 남은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정부의 이주정책 때문에라도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어떤 조직에서건 "대응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시작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유족도 한국에 없고 소통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은 포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 소식을 듣고 지역병원과 영안실을 수소문하고 현장을 무작정 가기도 하고, 추모와 항의 행동을 통해 소식을 알려내면서 정보를 취합하기도 합니다.

이번 투쟁도 그러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라도 해본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면, 싸움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이길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아웅민우 님의 투쟁으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특히 군부 독재라는 미얀마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조건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행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본국과 한국의 사회정치적 상황 모두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투쟁하며 고려해야 할 본국 상황에 대한 대처들은 한국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국제연대활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하여 다른 중대재해를 대응할 때는 지금보다는 나은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SK에코플랜트 사측의 공식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개선조치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고인과 함께 일하며 트라우마와 불안에 떨던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고용허가제 장벽 돌파)을 쟁취한 것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기록집이 유족에게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위로와 힘을, 현장의 이주노동자 동료들에게는 일터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조직들에게는 '다음 싸움을 준비해볼 수 있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아웅민우 님의 죽음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투쟁에 존경을 보내고, 함께 투쟁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차별에 맞선 모두의 행동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벽을 부수는 망치질입니다. 망치질이 지속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2026년 11월 10일

1

CHAPTER 1

사건개요

1. 사고개요
2. 현장의 문제점
타임라인

1 사고개요

공사명	KTX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공사 위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지하 터널 구간, TBM 공법)
발주처	국가철도공단
원청(시공사)	SK에코플랜트(주)
하청 (현장협력업체)	LT삼보(주) — 미얀마·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약 60명, 내국인 30~40명 고용
사고 일시	2026. 7. 1.(수) 오후 4시경 (동료 최초 발견 15:50경, 사망 17:10)
사고 장소	터널 내 토사(버력) 반출용 컨베이어 벨트 구간 (CCTV 촬영 구역 아님)
피해자	아웅민우(Aung Min Oo), 37세, 미얀마 국적, 고용허가제(E-9), LT삼보 소속 / 배우자와 자녀
담당 업무	터널 내 컨베이어 벨트 점검
사고 경위	단독으로 컨베이어 롤러를 점검하던 중 상체가 벨트·롤러와 지지대 사이에 협착. 인근 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관리자가 발견
이송 경위	16:11에 119 신고 → 단국대학교병원 → 17:10 사망

아웅민우는 2026년 7월 1일(수) 16시경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TBM 구간 상선 12KM642 시점부(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인근) 토사 반출용 터널굴진기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이는 산재사고를 당했다. 16시 11분 고인의 사고에 대한 119 신고가 이뤄지고, 16시 30분경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진행하였으나, 17시 10분 사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곳은 국가철도공단이며,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이고, 아웅민우는 SK에코플랜트의 협력업체인 LT삼보 소속 노동자로 근무했다. 해당 현장은 SK에코플랜트가 원청으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LT삼보에서 내리는 형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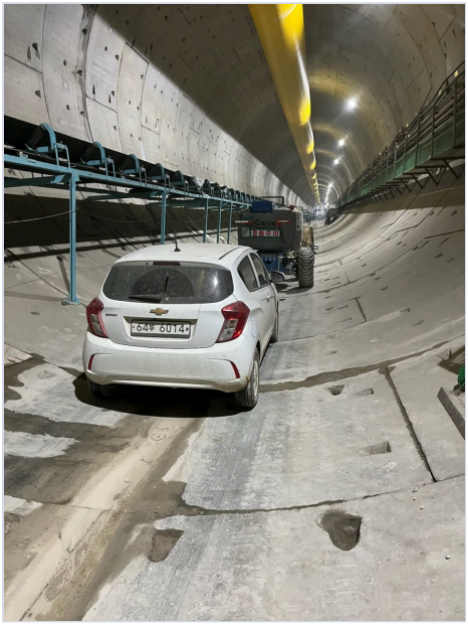
운영되고 있었다.

아웅민우가 일을 했던 현장은 TBM공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은 거대한 원통형 기계 굴착기를 이용해 땅속을 파가며 터널을 뚫는 최첨단 기계식 터널 굴착 공법이다. 땅을 뚫으면서 동시에 시멘트를 붙여 터널을 만든다. 화약을 터뜨리는 기존 발파 방식(NATM) 공법과 달리 기계로 암반을 갈아내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기존 공법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터널을 뚫어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웅민우는 터널을 뚫으며 나오는 토사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롤러를 조정하며, 롤러에 묻은 토사를 긁어내고, 롤러를 교체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하였다. 컨베이어 벨트의 롤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망치로 롤러를 쳐서 롤러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망치를 휘두르기 위한 안정적인 작업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아웅민우가 사고를 당한 작업공간은 비좁고 불편하였으며, 안정적인 작업발판이 없어 불안정한 자세로 컨베이어 벨트에 무리하게 가까이 접근하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웅민우는 롤러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TBM(터널굴진공법) 참고자료



사고현장인 터널 내부 사진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위치

2 현장의 문제점

1) 작업방식의 문제

고인과 함께 일하던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의 이상을 육안과 소음을 통해 감지하며 롤러에 이물질이 끼어있는 경우 망치로 두들겨서 처리해야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지 않으면 이상을 발견할 수 없기에 컨베이어 벨트의 이상을 점검하는 것은 가동 중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점검은 물론이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도 설비가 작동하는 와중에 망치로 두들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작업방식이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비상정지 풀코드 스위치 밑으로 피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설비 점검 작업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정비 작업을 행할 때는 반드시 설비를 정지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점검 작업과 정비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비 작업 시 설비정지를 작업표준으로 해서 작업이 이뤄졌어야 한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 정지 권한은 관리자에게 있고, 작업자들에게는 없었다.

2) 설비의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으로 회전체에 대한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며, 덮개에는 인터록이 설치되어 덮개가 제거되면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야 한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는 안전검사 대상이며, 덮개는 물론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난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컨베이어 벨트 하부의 바닥은 평지가 아니라 곡면이며, 미끄러질 위험도 있었다. 이는 작업을 위한 기초적인 통로, 발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고 현장의 컨베이어 벨트 건너편 멀리 비계로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통로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동자들은 통로도 아닌 곳으로 이동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정비한 것이다.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고지점이 더 비좁아 불편한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장소의 구조상 적절한 높이의 밟을 곳이 없어서 더 높은 곳을 밟게 되거나, 타격하려는 롤러의 위치가 프레임 사이 비좁은 곳에 있어서 무리하게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3) 안전교육의 문제

안전교육은 월 1회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가 따로 진행하였다. LT삼보의 안전교육은 10분 정도로 진행되며, 간단한 주의 사항만 전달하고 끝났다. SK에코플랜트 안전교육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나, 두 교육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고 통역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들은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굴착공사 및 컨베이어 관련 특별안전교육은 4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4시간 교육은 받지 못했고, 내용도 컨베이어 관련 위험은 듣지 못했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이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다. 툴박스미팅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계가 가동 중이 아닐 경우만 진행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진술이다.

4) 2인 1조 근무의 문제

2026년 2월까지는 주간 3인, 야간 3인으로 근무하였는데, 3월 즈음 컨베이어를 점검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주간 2명, 야간 2명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현장 관리자는 2인 1조 근무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한 사람만 컨베이어 벨트 점검을 시키고 한 사람은 다른 일을 시켰다. 2인 1조 근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의 다른 관리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5) 산재 은폐의 문제

사측 관리자는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인터뷰 결과를 보면 모든 노동자들이 정비작업 시 비계를 밟고 올라가야만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통해 사측의 주장이 억지임을 알 수 있다.

아웅민우의 사고 이전에도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산재은폐가 일상적이었다. 스리랑카 노동자 발목에 임팩드릴이 떨어져서 다쳤는데 사측은 노동자에게 병원에는 냉장고 들다가 다쳤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미얀마 노동자 한 명은 파이프를

설치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사측은 문 닫다가 다쳤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한다.

타임라인

사고 발생부터 합의, 유해 송환, 사후 점검까지의 주요 일정.

7.1 (수)
- 사고 발생

7.2 (목)
- 고인이 이송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함께 추모기도

7.3 (금)
-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에서 수소문 끝에 아웅민우 배우자의 친척과 아웅민우와 현장에서 같이 일한 미얀마 동료 3명과 상담 진행

7.4 (토)
-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소금꽃나무, 아웅민우 배우자의 친척, 아웅민우의 동료와 1차 면담 진행
- 현장 상황 공유 및 유족 위임 절차 설명

7.6 (월)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안으로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도회 시작

7.7 (화)
- 세종충남본부, 유족 위임장 이메일로 수령

7.8 (수)
-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진행
- 미얀마노동자 고 아웅민우 중대재해 지원모임 구성

7.10 (금)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천안지청 상황팀장, 노동기준조사과 근로감독관 면담
- 아웅민우 동료와 2차 면담 진행

7.11 (토)
- 지원모임 온라인 회의 진행
- 유족 입국 문제와 사측과의 교섭 등 앞으로의 대응 논의

7.13 (월)
- 지원모임 회의 진행
- 사측 교섭 요구안 및 일정, 천안지청 면담 일정 및 요구안 확정

7.14 (화)
- 지원모임 회의 진행
- 유족 입국 일정 공유,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과 추모문화제 확정

7.15 (수)
- 유족 입국 및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마련
- 천안지청장 면담 및 요구안 전달

7.16 (목)
-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진행 후 SK에코플랜트, LT삼보와 1차 교섭 진행,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가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1차 교섭을 마친 뒤 1차 실무교섭 진행
-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 아웅민우 추모문화제 진행

7.17 (금)
- 1차 실무교섭 이후 사측이 처벌불원서 작성 요청했으나 거부
- SK에코플랜트, LT삼보와 2차 실무교섭 진행, 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작성

7.18 (토)
- 유족, 아웅민우가 일했던 현장 및 숙소 방문
-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LT삼보 대표이사 빈소 방문

7.19 (일)
- 아웅민우 추모제 진행
- 지원모임 회의 진행
- 아웅민우 중대재해 대응 평가, 유족 출국 및 투쟁 마무리를 위한 실무 논의

7.27 (월)
- SK에코플랜트, LT삼보 면담 진행(사측 재발방지대책안 논의)

7.28 (화)
-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로복지공단 주최로 추모식 진행 후 유족 출국

이후 대응
- 천안지청, 사측과 면담 및 유선 논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합의안 이행에 대해 소통
-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이동 선택
- 트라우마 치료 종료, 작업중지 기간에 대해 3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완료

2

CHAPTER 2

죽음이 발생하다

1.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2. 살인적 노동조건
3. 지워진 핏자국, 감춰진 머리카락

1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아웅민우는 2022년 4월 4일 한국에 E-9 비자로 입국했다. 2022년 9월 인천에서 일을 했고, 2024년 9월 파주에서 일을 했다. 아웅민우는 2025년 4월부터 아산으로 옮겨 SK에코플랜트의 하청업체 LT삼보에서 일했다. 인천과 파주에서도 아산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했다. 터널 TBM 공사 현장에서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최초 취업 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 추천을 받아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최대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웅민우는 2025년 4월까지 일해 최초 취업 기간 3년을 채웠다. 재고용 추천을 받아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됐고, 체류 기간도 2027년 2월 4일까지 연장됐다. 2027년 2월 고용허가제 비자가 만료되면 미얀마로 돌아간 후, 성실근로자로 다시 입국해 일할 생각을 하곤 했다.

한국에 오기 전 그는 말레이시아에서도 5년 정도 일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로 일했다. 아내와 자녀 4명이 미얀마 양곤에서 살고 있다.

숙소의 이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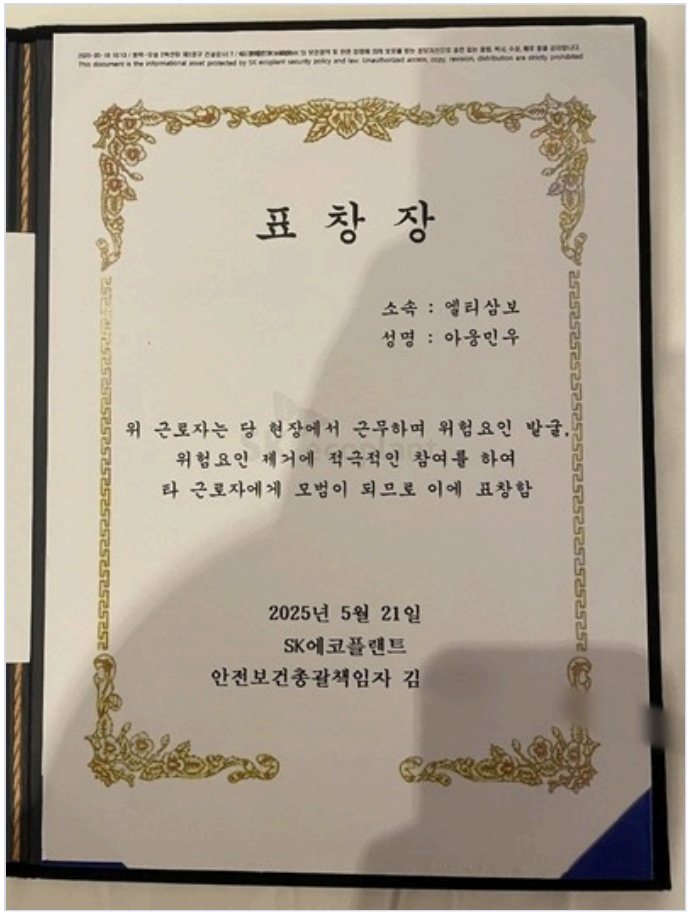
아웅민우는 한국에서도 가족을 살뜰히 챙겼다. 그는 틈만 나면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하며, 신앙심이 깊었다. 기독교인이었던 고인은 평소 여가 시간이 나면 성경을 자주 읽었다. 기타를 치며 찬송가도 부르곤 했다. 숙소 벽면에 성경 글귀를 적어두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미얀마에 다시 정착해 선교활동을 하려는 꿈도 갖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선교사를 하려고 했다. 한국에서 번 돈을 모아 미얀마에 작은 땅을 사뒀다. 미래를 위한 착실한 준비였다.

그는 숙소의 '이발사'도 맡았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미용실에 가면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누군가 "민우 씨, 우리 머리 길었어. 머리 잘라줘"라고 하면, 숙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례차례 머리를 잘라 줬다.

원청이 준 표창장을 받다

아웅민우는 2025년 5월 21일 원청인 SK에코플랜트에서 주는 표창장도 받았다. 동료들은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라고 했다. 안전을 잘 지키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상이라고 했다.



아웅민우는 회사의 '외국인 반장'과 다름없었다. 관리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려 할 때 곧잘 아웅민우에게 먼저 얘기하곤 했다. 그는 많은 이주노동자에게 직접 일을 가르쳤고, 이주노동자들은 그를 형처럼 따랐다.

그는 건설·채굴 단순종사원으로, 컨베이어팀에 속했다. 벨트 효율이 떨어지거나 마모되지 않게 컨베이어 벨트 롤러를 조정하는 등 설비를 점검하고, 벨트에 묻은 토사 등을 긁어내는 스크레이퍼 설비를 관리했다. 그 외 롤러를 교체하고 폐기물을 치우는 등 현장에 필요한 일을 같이 맡았다. 롤러 조정은 보통 망치를 들고 벨트 아래의 롤러를 쾅쾅 쳐서 하는데, 한 롤러당 대여섯 번씩은 쳐야 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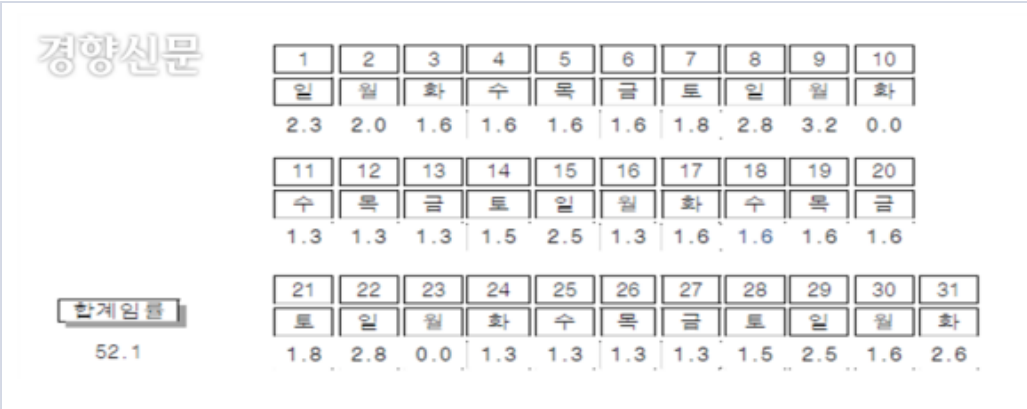
컨베이어 벨트 길이는 2.6km 정도다. 그런데 비상줄은 초반 1km에만 설치돼 있었다. 정지 장치는 벨트 방향을 따라 줄 모양으로 설치됐는데, 이를 당기면 벨트가 멈춘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망치를 두드리다가 벨트에 끼이면, 왼손으로 줄을 잡아당겨 벨트를 멈출 수 있다. 2.4km 위치에서 발견된 아웅민우 주변엔 비상줄이 없었다. 4월쯤 한 동료가 관리자에게 위급 상황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줄 설치를 요구했지만, 관리자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만 했다.

2 살인적 노동조건

아웅민우는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2026년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공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노동량이나 작업 시간을 환산한 단위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1공수'는 8시간 근무를 뜻하며,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가산 적용된다.

공수량을 근거로 추산한 아웅민우의 2026년 3월 근무시간은 총 355.2시간, 일평균 11.45시간이다. 아웅민우는 같은 달 10일(화)과 23일(월)은 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0공수), 이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6~20시간쯤 철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는 3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2025년 사측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엔 매주 토·일이 휴일로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아웅민우의 2026년 3월 근무시간 (출처: 경향신문)

아웅민우의 2026년 3월 근무시간

임금 차별 의혹도 있다. 숨지기 전달인 6월 LT삼보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단순직' 이주 노동자들의 1공수당 일당은 10만 3,200원이었다. 여기에 야간 수당, 특근 수당이 붙는 식으로 보인다. 반면 정주 노동자들의 경우 1공수당 일당이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이었다.

4월 전엔 반장을 포함해 팀원이 6명이었다. 이 중 1명이 미얀마로 돌아갔고, 이전 반장도 일을 그만뒀다. 이후 다른 업무를 맡던 반장이 컨베이어팀 반장으로 왔다. 이 반장은 컨베이어 벨트 일을 잘 몰랐다. 반장을 빼면 4명이 일했는데, 반장은 종종 한 명을 컨베이어 벨트 점검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투입하기도 했다. 동료들은 인력이 충원되어 2인 1조로 일했다면, 아웅민우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3 지워진 핏자국, 감춰진 머리카락

터널 안에서 작업하던 아웅민우의 한 동료는 7월 1일 오후 3시 20분쯤 아웅민우가 터널 안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갑자기 4시쯤 현장의 기계가 멈췄다. 컨베이어 벨트 팀이 아니라 TBM 팀에서 일하던 그는 동료로부터 '빨리 나와 현장 안으로 더 들어가

보라, 내려가 보라'는 연락도 받았다. 누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는데 미얀마 노동자라는 소식이었다.

그는 곧 터널 안쪽에서 나오던 반장들을 봤다. 표정이 모두 심각했다. 그는 관리자들에게 "누가 사고 났어요?"라고 물었는데 "묻지마!", "나중에 알게 돼" 등의 답만 들었다. 곧 피해자 신원을 알게 된 미얀마 노동자들은 피해자를 실은 관리자 차량으로 다가가 "차 세워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차를 몰고 바로 나갔다. 위급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19 접수기록을 보면 최초 접수 시간은 오후 4시 11분 32초이고, 통화 시간은 1분 36초다. 신고자는 터널에서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다.

처음 아웅민우를 발견한 사람은 스리랑카 노동자였다. 스리랑카 노동자와 과장이 아웅민우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빼냈다. 다른 관리자 한 명이 왔고 셋이 아웅민우를 '모닝'에 싣고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노동부가 왔다.

스리랑카 노동자가 아웅민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웅민우의 혀가 나와 있었다고 했다. 동료들은 그때 이미 아웅민우가 죽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실제로 119 기록을 보면 최종 사망 시간은 오후 5시 10분이다.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노동자들은 이미 죽은 것은 아닌가, 의문을 품은 것이다.

119 신고접수 녹취록

국회의원 요구자료 · 제공된 녹취록 원문 기준 표 형식 재구성

최초 신고	2026. 7. 1. 16:11:32	통화 시간	1분 36초

구분	내용	비고
접수요원	네. 119입니다.	
신고자	여보세요 119죠?	
접수요원	네 119예요 말씀하세요.	
신고자	예. 예. 저희 쌍암리 56번인데.	
접수요원	무슨 일이세요?	
신고자	예. 어... 사람이 지금 끼어가지고.	
접수요원	어디에 껴다고요? 벨트에?	
신고자	벨트... 예.	
접수요원	벨트가 안 열려요?	
신고자	아니. 아니요. 벨트에서 사람은 나왔는데 좀 심하게 다쳤어요.	
접수요원	그러니까 구조 상황은 없고 구급차만 필요해요?	
신고자	예. 예. 빨리. 빨리 좀 와야... 와야 되겠는데...	
접수요원	예. 좀 침착하시고요. 의식이랑 숨은 쉬고 있어요?	
신고자	지금... 예. 숨... 숨은 쉬고 있는...	
접수요원	의식이랑 숨은 쉬고 있어요?	
신고자	예. 예. 예.	
접수요원	차량 단독 사고예요?	
신고자	아니. 차량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벨트. 우리 건설 현장인데...	
접수요원	예.	
신고자	벨트에 끼겨 가지고 압착이 된 것 같은데	
접수요원	끼기셨어요?	
신고자	예.예 그렇게....	
접수요원	신고자분 주소가 쌍암리 56으로 가면 돼요?	

제공된 녹취록 텍스트 기준 · 원문 발언 순서 유지 1

119 신고접수 녹취록 | 계속

구분	내용	비고
신고자	예.예.예	
접수요원	외관상 출혈 있어요?	
신고자	아. 저도 안... 안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연락만 받아 가지고...	
접수요원	그럼 현장 번호 알려주세요. 저희 현장 번호도 필요해요. 환자 응급처치해 드려야 돼요.	
신고자	현장 번호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접수요원	신고자분이 지금 환자. 환자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자	저는 밖에 있고 터널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접수요원	터널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신고자	예. 예. 건설 현장인데. 터널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접수요원	현장에 환자랑 같이 있는 사람 번호는 몰라요?	
신고자	연락이 안 돼요. 터널 안이라서. 외부의 제한테 연락이 돼야 돼 가지고. 터널에선 연락이 안 돼요.	
접수요원	의식이랑 숨 쉬고 있는 건 정확해요?	
신고자	예. 그... 숨은 쉬고 있다지? (3자와 대화) 예. 의식은 있답니다. 의식은.	
접수요원	알겠습니다. 쌍암리 56으로 출동할게요.	
신고자	예. 예. 예. 지금 좀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접수요원	네	

녹취록 작성 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등 인감사항은 모두 ○○ 처리함

○ 본 녹취록은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19회선을 통해 신고 된 내용을 녹취장비를 검색하여 소방관이 청취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문속기사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검색과정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작성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파일을 제3자에게 목적 외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녹취록 텍스트 기준 · 원문 발언 순서 유지 2

119 신고접수 녹취록 (출처: 정혜경 의원실)

당시 터널 밖에서 일하던 또 다른 동료는 오후 4시쯤 “컨베이어 벨트를 좀 풀라(멈춰라)”라는 지시를 듣고 영문도 모른 채 벨트를 풀고 있었다. 이후 벨트에 끼인 아웅민우를 꺼내려는 조치였다는 걸 알게 됐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 아웅민우의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관리자들이 치웠다. 핏자국도 약간 있었는데, 바로 누군가 지웠다. 관리자는 아웅민우를 최초로 발견한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바로 숙소로 들어가라고 했다.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웅민우의 동료는 스리랑카 노동자가 다른 동료들과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며 회사를 비판했다.

오후 4시 반쯤 과장이 사람들에게 아웅민우가 죽었다고 얘기했다. 동료에게 가족 전화번호 알려달라면서 자녀가 몇 명 있는지 물어봤다.

다음날인 7월 2일 사측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통역자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은 통역자가 노동부에서 회사에 소개해 준 통역자인지, 공식 통역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동료들은 통역자가 통역을 하면서 계속 회사에 유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앞으로 경찰이나 노동부에 불려 갔을 때 이 통역자를 다시 만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3

CHAPTER 3

죽음이 알려지다

1. 첫 만남

2.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다

인터뷰 유족이자 유족의 곁에서 같이 싸운 “마모” 씨

1 첫 만남

경기도 오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용덕 활동가는 7월 2일 아침 '네이버 뉴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를 검색하다 아웅민우의 소식을 보고 주변에 알렸다.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텔레그램 방에 관련 뉴스를 올렸다.

같은 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상황을 알아보고 소식을 올렸다. 시신이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날 고인이 안치된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세종충남본부가 함께 방문해 추모기도를 진행하며 아웅민우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빈소는 차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7월 3일 소금꽃나무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배예주 활동가에게 연락했다. 울산의 여러 단체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꾸준히 연대했다. 선전전, 집회, 모금운동을 하면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탰다. 소금꽃나무는 아웅민우의 사망 소식을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나 미얀마 공동체에 알려 가족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배예주 활동가는 소금꽃나무에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하는 미얀마 활동가 한 분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소금꽃나무는 바로 그 분에게 아웅민우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오후 3시쯤 아웅민우의 아내 친마이마이님(이하 존칭 생략)의 외사촌인 마모님(이하 존칭 생략)에게 연락이 왔다. 소금꽃나무의 연락을 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 활동가가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했다.

마모의 목소리는 많이 떨렸다. 옆에 누가 있는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함께 들렸다. 마모는 현장의 숙소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소금꽃나무는 마모에게 오산 사무실로 와 달라고 했지만, 마모는 아산과 오산 중간인 평택에서 보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평택엔 아는 곳이 없고 카페는 시끄러울 것 같아 사무실로 오라고 다시 부탁했는데, 알았다고 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사무실로 오는 동안에도 여러 군데서 자신들에게 맡겨 달라, 한국노동인권단체에 맡기지 말라는 전화가 와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했다. 그래도 소금꽃나무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호감이 생겼고 오게 됐다고 했다.

마모와 마모의 친구, 아웅민우 동료 세 명이 같이 왔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는 느낌이었다. 동료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말을 조금 했고, 다른 두 명은 한국말을 못했다. 통역은 한국에 오래 산 마모가 다 맡아야 했다.

소금꽃나무 장혜진 노무사는 3월 이천 중앙산업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23세 베트남 이주노동자 응웬반뚜안 사건 대리 경험을 얘기해줬다. 브로커와 달리 돈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며, 유족과 동료들이 믿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우선이고, 그래야 아웅민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차분하게 1차 상담을 진행했다. 아웅민우의 인적 사항과 사망 당시의 상황, 사고 원인, 회사의 대응을 물었다. 유족의 상태도 물었는데 친마이마이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고, 너무 울어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아웅민우의 장모는 식사를 못한다고 했다. 미얀마에 있는 친마이마이와 가족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했다.

이 사망사고는 페이스북으로 미얀마 노동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했다. 친마이마이는 비자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동료들은 회사가 2인 1조 원칙을 무시해서 아웅민우가 죽었다고 얘기해줬다. 인력 충원이 안 되었고, 일은 항상 힘들었다고 했다. 아웅민우가 사망한 곳에 비상줄이 없었다고 얘기했다. 하청인 LT삼보는 원청인 SK에코플랜트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리자가 현장의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하청은 바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리자가 주간과 야간 모두 현장 전체를 순회하기에 원청이 현장의 문제점을 모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동료들은 많은 얘길 해 줬다. 나중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동료들은 머리카락을 치우고, 핏자국을 지우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아웅민우의 죽음은 아웅민우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동료들은 진실을 얘기하기로 맘을 단단히 먹은 듯했다.

소금꽃나무는 유족이 회사가 소개해 주는 변호사나 대사관 노무관에 위임하지 말고 한국의 노동인권단체에 위임해 주길 바란다고 설득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유족의 몫이며, 다른 곳에 위임하더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충남 아산인데, 이 지역 민주노조운동을 이끄는 세종충남본부를 소개했다. 다음날 바로 세종충남본부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7월 4일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아산이주노동자센터와 함께 아웅민우 아내의 친척인 마모와 고인의 동료 3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유족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고 추진했다.

2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다

7월 6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서울 광화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극락왕생 발원 기도회를 열었다. 본사가 조계사 바로 뒤에 있어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 매일 11시 30분에 시작해, 한 시간 정도 기도회와 1인 시위를 함께 진행했다. 바로 여러 노동인권단체들이 함께 기도회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7월 8일 오전 11시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세종충남본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주최로 제안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이었다. 마모가 아웅민우의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일 기자회견을 보도한 매체는 매일노동뉴스와 오마이뉴스, 법률신문 정도였지만, 이때부터 아웅민우의 죽음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소금꽃나무는 응웬반뚜안 사망사고 투쟁 때 알게 됐던 기자들,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를 취재했던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MBC, 뉴스타파, 프레시안,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서 연락이 왔다. MBC 차주혁 기자는 직접 아산에 내려와 동료들을 인터뷰했고 현장에도 찾아갔다.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는 친마이마이의 입국 때부터 밀착 취재를 진행했다. 홍여진 기자는 노동부, 경찰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많은 정보 공개 요청을 시도하면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15일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고속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사실도 밝혀냈다. 홍여진 기자는 두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한 편은 조회수가 6만 가까이 됐다. 경향신문 우혜림 기자도 친마이마이의 입국을 취재하면서 유족의 슬픔을 오롯이 전했고,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와 한겨레 권효중 기자도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와 유족과 동료들을 인터뷰했고, 진실을 알렸다.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여러 기자가 관심을 보이고 보도했다.

친마이마이는 입국할 때는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으나, 추모제 때부터는 용기를 내 얼굴을 드러냈고, 큰 슬픔을 억누르며 자기 생각을 다 들려줬다. 동료들도 컨베이어팀 인원이 많지 않아 회사가 다 눈치챌 수 있었는데도, 주눅 들지 않고 기자들을 만나 소중한 증언을 했다.

INTERVIEW

유족이자 유족의 곁에서 같이 싸운 “마모” 씨

“회사의 책임으로 죽은 경우는 지원단체에 연락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아웅민우의 중대재해 대응 투쟁에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가 모였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마모’씨다. 마모 씨는 2013년 한국으로 유학 와서 2026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마모 씨는 고인의 부인인 친마이마이와 자매같은 외사촌으로 아웅민우와는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했다고 한다. 한국으로 온 아웅민우와 몇 차례 통화도 하며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는 곳도 일하는 곳도 멀어서 쉬이 만나지 못했다.

2026년 7월 1일. ktx복선화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아웅민우가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미얀마 노동자의 사고 소식을 전해주곤 하던 이의 페이스북에 떴다. 그것을 먼저 본 것은 미얀마에 있는 마모 씨의 언니들이었고 마모 씨에게 확인전화가 왔다. 그리고 유족인 친마이마이 씨에게 전화가 왔고 현장에서 아웅민우의 사망사고를 확인한 동료가 마모 씨에게 또 전화를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마모 씨도 유족인 친마이마이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마모 씨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나서 사고가 난 현장으로 먼저 갔다.

미얀마 대사관은 통역관을 통해 합의, 동의라는 말만 계속했고, 동료와 마모 씨는 무조건 동의하는 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유족인 친마이마이 씨도 마찬가지였다.

뭐가 어떻게 됐든 고인의 부인인 친마이마이 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다고 마모 씨는 생각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노력해도 못 들어올 때는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친마이마이 씨가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방법을 찾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미얀마에 있는 유족과 마모 씨의 친구는 한국으로 들어올 비자를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그 사이 마모 씨는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사망사고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의 소개로 동료들과 같이 상담을 하러 갔고 이후 지원모임 단체들을 만났다.

법률상담을 받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만나고 여러 단체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해 알고 지내던 한국인 언니는 "외국인이라 모르는 거 같은데 민주노총에 위임을 하는 건 우려"된다는 조언도 했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읽힌다는 의미였다.

마모 씨는 기도하고 생각했다. 마모 씨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유족에게 그냥 맡겨둘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유족이 끝까지 싸울건지, 뭘 위해 싸울건지도 이야기해가면서 한국에서의 대응을 준비해야 했다. 한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보상을 많이 받아준다며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 **"상담하고 나서 끝까지 믿고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도와주신 여러 단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끝까지 한다는 신뢰가 생겼어요. 말에 힘이 있고 힘이 되더라구요."**

마모 씨는 그런 믿음으로 고인의 부인이 입국하기 전에 진행해야 했던 기자회견에 유족으로 발언했다. 매일 아웅민우와 영상으로 통화하던 가족들의 절망, 아빠 어떡하냐고 언제 오냐고 울기만 하는 고인의 딸의 아픔이 마모 씨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 **"내가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모 씨의 용기는 동료들의 증언과 함께 투쟁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자 친마이마이 씨가 한국에서 투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런 생각으로 미얀마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유족인 부인이 한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고 마모 씨는 미얀마의 한국대사관 상부에

메일도 보냈다. 그리고 한국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고인의 부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고인의 부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마모 씨와 함께했다. 마모 씨의 차로 이동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자고 울고 웃었다. 고인의 부인과 함께 온 통역가도 마모 씨의 친구였기에 서로 마음이 어긋나지 않았다. 마모 씨는 아웅민우의 사망사고 소식을 접하고 예약해두었던 해외여행을 미뤘고 고인의 부인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함께 움직였다.

고인의 사망사고 이후 유족인 부인이 입국하고 다시 고인과 출국하기까지 한 달.

> **“지원단체들이 SK 앞에서 피켓팅도 하고 미얀마 가족들은 기도하고 그 외에도 다들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함께 해줘서 이긴 거 같아요. 한국생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잘 정리됐다고 얘기들 해요.”**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해 마모 씨는 슬프지만 기쁜 상황이었다고 표현한다. 유족인 부인이 입국한 후에도 싸움이 길어지면 다른 가족도 입국해서 함께 힘을 합칠 생각도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지원단체들이 있어서 같이 싸워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지원단체에 꼭 연락하세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려워요. 유족들이 마음이 슬프겠지만 도와주겠다는 단체를 믿고 맡겨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지원단체가 없으면 대사관이나 통역관들이 마음대로 하니까요.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동료들은 회사 눈치 보게 되는데 회사 잘못한 것도 알려야 하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웅민우의 죽음을 대응하며 마모 씨는 미얀마 사람들이 서로 엮이고 힘을 줄 수 있는 센터를 꿈꿔왔던 자신의 희망을 일부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꼈다. 아웅민우의 죽음 이후에도 미얀마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페이스북에 여전히 소식이 올라오지만 아무도 모른다. 같은 죽음이지만 너무나 달랐던 아웅민우의 죽음이라고 마모 씨는 생각하고 있었다.

> **“혼자 일하러 가면 회사가 부른대요. 혼자 가면 안 된다 하고 회사가 조심스러워졌대요. 동료들의 문제도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이 알려지고 바뀌는 게 있잖아요.”**

같은 죽음이지만 다른 결과를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마모 씨는 너무 고맙다. 자신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고 싶어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고 미얀마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4

CHAPTER 4

죽음에 대응하다

1. 지원모임 구성
2. 유족 입국과 교섭
3. 합의 후 귀국까지의 과정

1 지원모임 구성

7월 4일 세종충남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대략적인 사고 개요와 현장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모에게는 유족들이 회사에 대한 요구와 협상, 합의에 대한 권한을 세종충남본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

아내의 뜻이 확인되면서 세종충남본부는 중대재해 관련 대응 투쟁 전반에 대해 수임을 받기로 결정했다. 유족은 입국 전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먼저 보내왔다.

7월 8일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 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제안 및 참가단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당일 회의에서는 규모를 늘리고 세밀한 체계를 갖춘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보다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작은 규모라도 빨리 만드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권 활동단위들이 결합하는 지원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 조력을 위해선 금속노조 충남법률원이 신속하게 법률 자문계약 체결을 추진했다.

서울 중심으로 언론 홍보와 대정부 대응을 하고, 지역 중심으로 노동부와 시공사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족 입국 전 지역에서 함께 하는 단위들이 모여서 사측과 노동부에 대한 요구안을 정리했다. 7월 10일, 천안지청 상황팀장을 만나 작업 중지와 산업안전감독 현황 등을 확인하고, 노동부에 대한 대략적인 요구안을 전달하고 7월 15일 천안지청과의 면담도 잡는 등 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확인해나갔다.

다른 한편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교섭요구 공문을 세종충남본부 명의로 발송하고, 지원모임은 7월 16일 서울 SK에코플랜트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2 유족 입국과 교섭

유족의 입국이 비자 문제로 지연되면서 원청 SK에코플랜트와 하청 LT삼보는 본부와 같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 영상으로 소통하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은 입국을 위해 대사관을 찾아가고 지원모임에서도 노동부, 주한 미얀마대사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등에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발급을 다방면으로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인도적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고, 친마이마이가 통역을 지원하는 다른 미얀마인과 함께 7월 15일 입국하게 되었다.

유족 입국이 가시화되면서 사측은 "빈소를 회사에서 차리겠다, 유족이 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사측이 나가서 에스코트를 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지원모임은 "장례 절차는 유족과 위임받은 본부에서 진행하니까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인천국제공항과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불편한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7월 15일 새벽 6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인 친마이마이와 통역 예린 씨가 함께 입국했다. 입국하자마자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안치실로 달려갔고, 아내는 시신을 보고 오열했다. 지원모임은 아내와 통역인 예린 씨, 외사촌 마모 씨에게 이후 일정을 알려줬고, 곧바로 빈소를 차렸다.

당일 14시에 천안지청에서 지청장을 비롯해 각 유관부서장을 면담해 유족 대리인으로서 노동부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유족이 입국하고, 빈소가 마련된 바로 다음 날인 7월 16일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청사인 SK에코플랜트, 직접고용 당사자인 LT삼보와 교섭에 돌입했다.

당일 SK에코플랜트 사내에서 진행된 교섭에서 지원모임은 유족 배·보상안은 바로 제시하지 않았다. 사측이 '정주노동자와 차별 없는 배·보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확인되면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5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원·하청은 공개 사과와 동료 트라우마 치료와 작업 중지 기간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 재발방지 방안, 장례비와 유족 체류비 지급 등의 쟁점에 대해 지원모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교섭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17시부터 실무협의로 전환해서 교섭 속도를 높였다.

당일 교섭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후속 교섭을 공휴일인 17일(금)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사측이 17일 오전까지 처벌불원서 제출을 집요하게 요구해 17일 교섭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처벌불원서 문제를 교섭의 사전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17일 16시부터 다시 실무협의를 재개했다. 당일 밤까지 이어진 장시간 교섭 끝에 유족과 지원모임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담은 최종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은 처벌불원서를 쓰지 않았다.

3 합의 후 귀국까지의 과정

합의 이후 지원모임은 사측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유족이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안전하게 미얀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18일부터 고인을 한국에서 보내드리는 절차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유족은 고인의 시신을 가능한 한 온전히 모셔 간 후, 미얀마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길 희망했다. 따라서 엠바밍(embalming,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부패를 일정 기간 지연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시신 보존 기술) 업체를 섭외해야 했고, 유족과 고인의 시신이 타고 갈 비행기 편을 구해야 했다.

19일 저녁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 지원모임, 동료들, 노동자 시민이 모여서 아웅민우 추모문화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친마이마이와 동료들은 지원모임과 도와준 노동자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원모임은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등을 정리했고, 시신을 엠바밍 업체에 인도했다. 노동자 시민이 모아준 조의금 및 투쟁기금도 아내에게 전달했다. 7월 27일 오전에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측을 만나 사측이 작성해온 개선조치계획에 대해 같이 심의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족과 지원모임은 7월 28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하는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예우 사업”에 참여했다. 친마이마이와 예린은 당일 15시 50분에 출발하는 미얀마행 대한항공 직항 편에 고인의 시신과 유품을 싣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미얀마로 돌아갔다.

5

CHAPTER 5

남은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다

1. 천안지청에 대한 요구
2. 재발방지방안 협의
3. 합의의 이행과 남은 동료들을 위해

1 천안지청에 대한 요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죽음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외에도 사고현장에는 중요한 과제들이 남게 된다. 남은 동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넘어 실효적인 재발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대응조치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주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노동부의 다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들임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대응과정에서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는 추가로 대부분의 동료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라는 점에서 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노동부 행정의 구조는 산재예방과 노동기준이 분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산재예방'관련 부서의 관할이 아니라 '노동기준' 관련 부서의 관할이다. 때문에 노동부의 통합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이 투쟁에서 특징적이자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경과

지원모임은 대응 초기부터 빠르게 사측에 대한 요구와 노동부에 대한 요구를 논의 및 결정하여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원청인 SK에코플랜트에 사측 요구안을 전달했고, 이후 7월 10일 천안지청 상황팀장을 면담하여 노동부에 대한 요구안과 함께 지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지청장과 지원모임의 면담은 7월 15일 이루어졌다.

7월 10일 동료노동자들과의 2차 면담을 진행해 추가적으로 사고경위와 일상적인 작업방식 등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요구안에 반영되는 내용은 아니었으나, 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 및 중대재해 수사에 대한 지원모임의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후 7월 13일 지원모임은 8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요구안을 더욱 구체화 및 확정하였다.

2) 노동부 요구안과 의미

(1) 유족과 대리인의 사고조사 참여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사업주 및 관계자들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을 수사하는 주체가 된다. 경찰의 경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는 주체가 되며, 이는 공식적인 사건수사의 과정이므로 노동부와 경찰은 수사 관련사항의 공개를 극도로 경계한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언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되는 수사 관련 내용들을 정작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아직 피해자나 유족의 수사에 대한 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라는 장벽으로 인해 공식적인 조사참여는 보장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모든 과정이 피의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수사의 과정 역시 모든 것이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을 잃은 유족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밝혀진 사고의 원인이나 수사의 진행상황 등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지청과의 면담을 통해 수사담당 감독관들과 소통 채널을 열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족 및 대리인이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일반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감독은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산안법 위반 외에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초과노동,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도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원모임은 천안지청에 산업안전감독과 더불어 노동기준감독도 동시에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천안지청 역시 동의했으나 노동기준감독과의 일정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시차를 두고서라도 노동기준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노동부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과 근로기준감독을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문제들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구조적인 허점들을 만든다는 것이 여러 사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조금 다른 결로 이주노동자 중심의 건설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드러내고 노동부가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작업중지명령 해제절차에 유족 및 대리인 의견 반영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가 취하는 작업중지명령의 목적은 동일/유사사고의 재발을 차단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충분히 수립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는 해당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 건설업을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작업중지명령은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현장개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원모임은 작업중지를 둘러싼 행정절차에서 유족과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사고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고자 노력했다.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는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주가 제출한 재발방지방안이 적절한지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과거 투쟁의 경우 유족 및 대리인 또는 당사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작업중지해제의 요건 중 하나는 사업주의 재발방지계획에 대한 해당 작업 노동자들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현실적으로 사측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라도 지원모임의 요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유족과 대리인의 의견 반영을 어떤 수준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고민이 있었다. 다행히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지원모임과 재발방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후 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겠다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에 노동부에는 지원모임의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의 요구로 갈음하였다. 만일 사측과 이러한 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사례들처럼 유족 추천 전문가의 심의회의 참석 등을 요구해야 했을 것이다.

(4) 산안법·근기법 및 중처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아직은 구속수사 또는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법원에서의 형량 역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처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어떤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원론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원모임은 산업안전과 노동기준을 포괄하는 통합 근로감독을 요구했고, 천안지청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감독결과에 따른 처벌도 엄정하게 집행하라는 요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처법 수사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발주자-원청-하청 구조가 대부분인 건설현장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까지 경영책임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원청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주자는 국가철도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었고, 법령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지침 중의 하나로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처벌조항이 없는 지침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진상조사에는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 **조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14조 3항**
>
>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모임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준비와 여력이 있었다면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면 원청, 발주자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노력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장기적인 활동이 결의된 것은 아니었기에 아쉽게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5)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사고현장만이 아니라 관할지역에서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한 천안지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25년 발표한 산재예방 종합대책에 이주노동자를 취약노동자로 명시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고 실효적인 예방대책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천안지청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였다.

(6) 터널굴진기 및 대형컨베이어 설비 운영실태 전수조사

울산 노후발전소 해체작업 중 붕괴(발파해체공법), 세종안성고속도로 고가공사 중 붕괴(DR거더 런칭가설공법) 등 신기술 및 신공법으로 인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사고 역시 TBM이라는 신공법으로 터널굴착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물론 컨베이어로 인한 사고는 전형적인 끼임사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TBM공법의 특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공법의 특성상 컨베이어가 공사기간 중 계속 연장, 가설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굴착과 정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방식 등이 일반적인 사업장에 설치된 컨베이어와는 다른 조건을 형성했다.

이처럼 이 사고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산안법 체계는 정해진 조치만 실시하면 면책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때문에 기존의 법령이나 규칙, 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과 신공법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적인 조치의 이행이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는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천안지청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문제였으나 천안지청을 통해 노동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7) 사측에 대한 지도 : 트라우마 관리, 동료노동자 고용 및 임금 보장에 대해 지도

노동부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과거 매뉴얼의 형태로만 존재했던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노동부 감독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많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노동자들은 적절한 트라우마 대응 프로그램 없이 고통 속에 방치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26년 6월 노동부는 기존의 매뉴얼을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지침'으로 격상하였다. 지침에 따라

지청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 대응 감독관을 지정하고, 해당 감독관이 트라우마 프로그램의 대상자, 사업주,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트라우마 대응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천안지청과 면담할 당시까지만 해도 지청은 해당 지침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면담 자리에서 급하게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맡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노동부의 대응이었다.

건설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중대재해로 인해 현장이 멈추면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고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평균임금의 70%(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노동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및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도는 노동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의 하나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중지 기간 임금 지급의 책임을 둘러싸고 원하청간의 다툼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배려를 요구했다. 트라우마 등의 이유로 사업장 이전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최대한 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 고용센터, 관할지청 등이 협조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나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약속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는 고통을 감내하며 사고현장으로 다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였다.

2 재발방지방안 협의

1) 경과

원하청 사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절차적인 핵심은 이 협의가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과 맞물려 있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만일, 지원모임과 회사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재발방지방안을 협의했다면 이는 그 대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는 절차는 사업주가 재발방지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을 첨부해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번 합의에는 노동부에 제출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사전에 지원모임과 협의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었다.

지원모임에 결합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는 사측과의 협의를 앞두고 7월 22일 내부 모임인 '현장개선 연구모임'에서 초안을 마련했다. 현장개선 연구모임은 새움터 현장회원들을 중심으로 월 1회 다양한 현장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모임이다. 마침 현장개선 연구모임의 구성원들 중에는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공단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어 컨베이어 관련 경험이 많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후 7월 27일 세종충남본부에서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측의 안전관리 실무책임자들을 만났고, 사측이 준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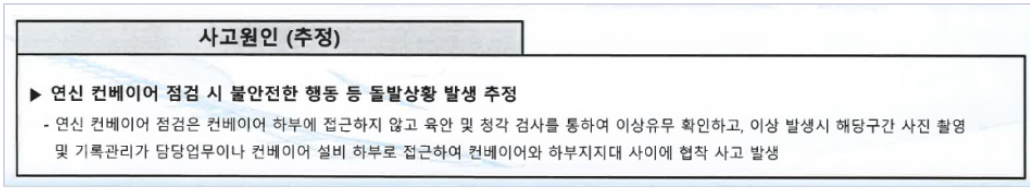
2) 쟁점

(1) 왜 작동 중인 컨베이어에 접근했는가?

재발방지방안의 시작은 정확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며, 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왜 아웅민우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에 접근해 작업을 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작업을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생산성, 품질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위험행동을 유도하는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공학적인 방법이나 관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위험작업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개선계획 협의과정에서 사측과 지원모임은 이 쟁점에서 가장 크게 충돌했다. 회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여전히 아웅민우의 사고상황을 '돌발상황', '불안전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응과정에서 만난 동료노동자들은 작동 중인 컨베이어를 점검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컨베이어의 풀리 부위(원통형의 회전체들)를 두들겨서 끼어있는 토사 등을 제거하는 방식이 매우 일상적인

작업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바닥이 미끄러워 매우 불편하고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정비작업은 컨베이어가 멈춘 후에 할 수 있는데 아웅민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사고원인 (추정)

▶ **연신 컨베이어 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 등 돌발상황 발생 추정**

- 연신 컨베이어 점검은 컨베이어 하부에 접근하지 않고 육안 및 청각 검사를 통하여 이상유무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해당구간 사진 촬영 및 기록관리가 담당업무이나 컨베이어 설비 하부로 접근하여 컨베이어와 하부지지대 사이에 협착 사고 발생

사측이 제시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중

지원모임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의 사고현장 사진을 꺼내어 사측에 보여주며 이야기했다. 김용균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회사의 첫 번째 입장이 정확히 그러했기 때문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다가 죽었다.” 사진은 컨베이어를 덮고 있던 케이스의 점검구가 대부분 떨어져 나가 뼈대밖에 남지 않는 모습이었다. 어떤 노동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달린 점검구를 모조리 떼어내고 손을 집어넣겠는가? 그렇게 일하게 만드는 조건과 작업환경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위반이라는 왜곡된 결론에 머물게 되고 재발방지방안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안전수칙 준수 등의 허울뿐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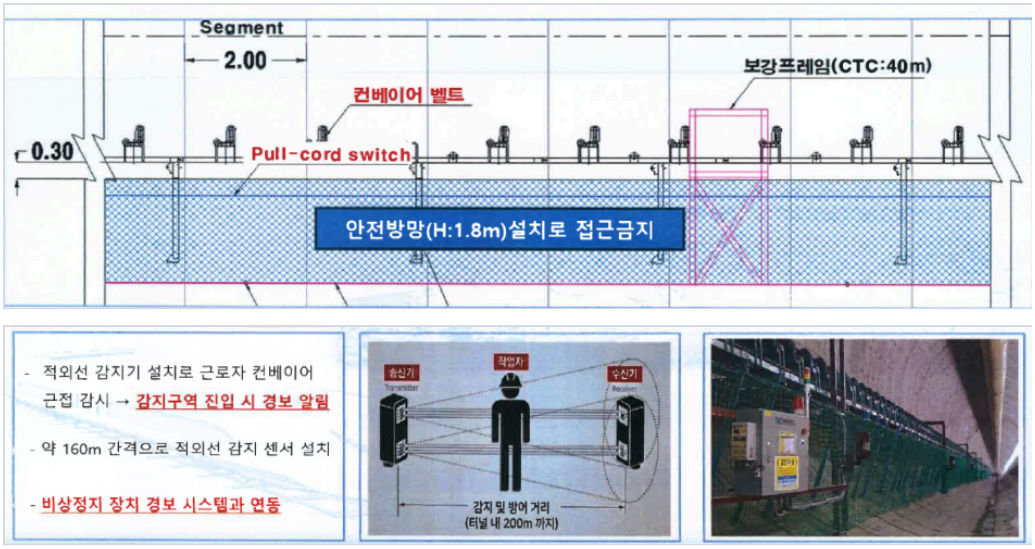
실질적인 재발방지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사고를 대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인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논의 끝에 사측은 다시금 노동자들에게 가동 중 정비작업을 하게 된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실, 추정되는 배경은 있었다. 대부분의 점검작업이 그렇듯 설비의 이상상태는 대부분 작동하는 중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때문에 컨베이어 역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육안으로 보기에 덜컹거리거나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정지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의 말대로 가동 중에는 말그대로 점검만 하고 정비는 가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한다는 원칙이 현실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발견된 시점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정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 소음이 발생하거나 덜컹거리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부품의 파손이나 마모가 더 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비용과 시간의 증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추정이며 정확한 현장의 상황은 객관적인 확인과 노동자들의 증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동료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2) 구체적 방안 : 가동 중 정비작업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

지원모임이 제시한 재발방지방안은 정상적인 작업용 통로와 인터록의 설치였다. 지원모임은 가동 중 점검과 정비가 물리적으로 차단되기 어려울 것이라 봤고, 지금의 작업방식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업'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이 작업을 공식화하고 적절한 작업환경과 공학적인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안한 방식이 점검과 정비를 위한 정상적인 발판과 통로를 설치하고, 전체 통로의 몇 개소에만 출입구를 설치, 출입구에는 인터록을 설치해 진입 시 컨베이어가 정지하도록 연동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를 수시로 멈추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반면 회사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은 예상보다 적극적인 방식이었다. 컨베이어의 측면 전체를 방호망으로 차단하여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접근 시에는 경보가 울리도록 센서를 설치, 점검작업시에는 안전감시자가 동행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시 말해 가동 중에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만 하고 실제 정비는 가동이 중지되는 시간에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비작업은 전용 정비차량을 이용해 컨베이어 상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면 측면의 방호망은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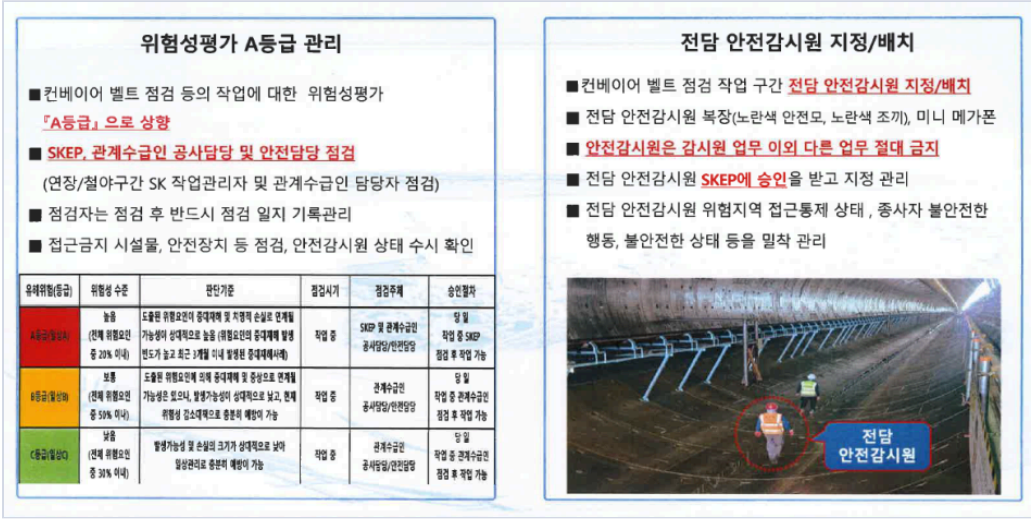
사측이 제시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중

'가능하다면' 회사가 제안한 방식이 산업안전보건의 원칙인 것은 사실이다. 개선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최우선 순위는 '위험작업 자체의 폐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의도대로 폐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처음 충돌한 사고원인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현장의 작업이란 아무리 물리적으로 막고, 안전수칙을 강조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동 중 정비작업을 했던 원인에 대해 회사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불안한 지점이었으나, TBM 공정의 특성상 일정 길이만큼 터널을 뚫으면 터널 벽에 콘크리트를 부착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몇 시간씩 정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시간에만 정비작업을 수행해도 공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이 일정한 합리성이 있었고, 이후 하청업체에서 정비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원청인 SK에코플랜트에 사전 품의를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동을 중단시키고 정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기존의 작업방식이 왜 일상화되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쟁점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되었다. 지원모임은 풀코드나 접근감지 센서가 감지될 때 컨베이어가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회사는 컨베이어의 즉각적인 정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연신컨베이어가 즉각적으로 정지할 경우 터널 내에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컨베이어 자체의 붕괴 우려가 상존한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연신컨베이어를 가동 중지시킬 경우 최소 20초에 걸쳐 서서히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지원모임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풀코드스위치의 장력이 느슨해진 경우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전체적인 점검 후 장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촘촘히 작업구간 전반에 걸쳐 풀코드스위치를 설치하기로 했고, 작업구간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방향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밖에 지원모임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회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2인 1조 작업원칙은 내부규정상 컨베이어 점검작업을 A등급 위험작업으로 상향하여 안전감시자 배치 하에만 가능한 작업으로 격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컨베이어 프레임의 붕괴위험에 대해서는 하중에 대한 설계를 재검토해 보강하기로 하였다. 다만 통신장비와 관련해서는 터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음성통신이 불가능하여 휴대전화의 데이터통신을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위험성평가 A등급 관리

■ 컨베이어 벨트 점검 등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A등급』으로 상향

■ SKEP, 관계수급인 공사담당 및 안전담당 점검 (연장/철야구간 SK 작업관리자 및 관계수급인 담당자 점검)

■ 점검자는 점검 후 반드시 점검 일지 기록관리

■ 접근금지 시설물, 안전장치 등 점검, 안전감시원 상태 수시 확인

유해위험(등급)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점검시기	점검주체	승인절차
A등급(철야포함)	높음 (전체 위험요인 중 20% 이내)	도출된 위험요인이 중대재해 및 치명적 손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위험요인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높고 최근 3개월 이내 발생된 중대재해사례)	작업 중	SKEP 및 관계수급인 공사담당/안전담당	당 일 작업 중 SKEP 점검 후 작업 가능
B등급(철야X)	보통 (전체 위험요인 중 50% 이내)	도출된 위험요인에 의해 중대재해 및 중상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있으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	작업 중	관계수급인 공사담당/안전담당	당 일 작업 중 관계수급인 점검 후 작업 가능
C등급(철야X)	낮음 (전체 위험요인 중 30% 이내)	발생가능성 및 손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상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	작업 중	관계수급인 공사담당/안전담당	당 일 작업 중 관계수급인 점검 후 작업 가능

전담 안전감시원 지정/배치

■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 구간 전담 안전감시원 지정/배치

■ 전담 안전감시원 복장(노란색 안전모, 노란색 조끼), 미니 메가폰

■ 안전감시원은 감시원 업무 이외 다른 업무 절대 금지

■ 전담 안전감시원 SKEP에 승인을 받고 지정 관리

■ 전담 안전감시원 위험지역 접근통제 상태 , 종사자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등을 밀착 관리

사측이 제시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중

3 합의의 이행과 남은 동료들을 위해

합의 다음날 유족과 지원모임 소속 활동가들이 사측의 안내 속에 고인의 생전 숙소와 고인이 일하던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당일 오후에는 원청인 SK에코플랜트와 고인이 소속됐던 LT삼보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연이어 장례식장에 방문해 조문했고, 유족에게 직접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다.

트라우마 치료에 관하여 사측은 교섭 당시 사내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으나 확인해보니 실질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부재했다. 세종충남본부가 운영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팀이 진행하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사측에 전달하고, 사측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충남근로자건강센터 담당 국장을 통해 사측이 트라우마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측과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양쪽을 통해 진행상황을 체크했다.

사측은 작업중지기간과 트라우마 치료기간 중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합의상황과 달리 “일일 8시간, 주 52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임금손실분을 보전하면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왔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구분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에 대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대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측으로부터 LT삼보에 소속돼 일하던 노동자들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전달 받고 확인했으며, 사측은 해당 임금 기준으로 작업중지기간과 트라우마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사측이 보내온 공개 사과문 초안에는 중대재해 사망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협의를 통해 사고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으로 수정해 양사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했다. 7월 24일(금) 한겨레신문 10면과 경향신문 23면,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양사의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이 게재됐다. 당초 각 신문사 1면에 게재하기로 했으나 유족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하루라도 빨리 사과문이 게재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지면이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과 지원모임은 양해했다.

또 사측이 소속 노동자 대상으로 사업장 이동요청 희망 여부를 파악한 내용을 확인하고, 파악하지 못한 미복귀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 계획을 확인했다. 천안지청은 외국인협력지원팀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고, 이후 동료들의 사업장 이동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유족이 출국한 다음 날 천안지청을 만나 7월 15일에 진행한 지청장 및 유관부서 면담 당시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7월 29일부터 천안지청이 해당 현장 4개 업체에 대해 일주일간 진행 예정인 근로기준분야 감독에 대한 현황을 공유 받고, 산재은폐에 대한 조사상황도 확인했다.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사측이 현장에서 다시 파악하고, 산재 신청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확인했다.

6

CHAPTER 6

이어가야 할 투쟁을 위해 남기다

빠른 대응, 여러 단체의 모여진 힘

동료들과 통역의 역할

아내의 결단

합의안의 의미와 이행 과정

아쉽고 부족했던 지점

아웅민우 님에게

빠른 대응, 여러 단체의 모여진 힘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빠르게 묻힌다. 신문에 몇 줄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죽음에 묻히기 일쑤다.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통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른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 서둘러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가정 형편상 포기하는 가족들도 많다.

그 사이 각국의 대사관과 회사는 빠르게 움직인다.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사망사고를 처리하면 결과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가족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진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합의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당연히 교훈은 남지 않는다.

이 투쟁은 달랐다. 노동인권단체와 세종충남본부가 초기부터 적극적, 능동적, 조직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아주 빠르게 유족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주인권단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동운동 조직들이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미얀마 활동가, 미얀마 노동자, 이주민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다. 이런 연대 과정에서 다양한 연대의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네트워크를 매개로 정보를 교류하고 지원 방안을 찾는다.

이번 투쟁은 이런 역사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주 활동가와 미얀마 활동가의 소통 덕분에 유족과 연결될 수 있었고, 대사관이나 회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초기 대응이 아주 빨랐다. 사고가 보도되자마자 바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세종충남본부가 장례식장 안치실에 직접 찾아가 이 사건의 실체를 활동가들에게 알렸다. 소금꽃나무는 아웅민우 아내의 외사촌인 마모 씨와 연결되자, 바로 상담하고, 유족과 동료들의 권리를 알려줬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즉각적인 기도회와 1인 시위는 회사를 압박한 아주 적절하고 유효한 판단이었다. 이미 작업이 중지된 현장에 대한 대응보다 서울 한복판에 소재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 본사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언론이 관심을 두게 만든 계기가 됐다.

세종충남본부의 위임과 지원모임의 결성은 회사와 대사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족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이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대응 경험이 일정하게 쌓여 있는 세종충남본부, 지역 단체와 전국 단위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함께 지원모임을 형성하고 밀도 있게 역할을 분담했다. 산재 사망을 어느 한 단체나 지역에 맡기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단체, 모든 활동가의 힘을 모을 수 있고,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동료들과 통역의 역할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아서 산재 은폐 우려가 있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는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탄압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다. 작업 중지 기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아 동료들의 추가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동료들의 용기는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한꺼번에 씻어 주었다.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파악한 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사측과 교섭을 할 때에도, 사측 및 노동부와 재발방지 조치를 논의하고 결과를 점검할 때도 더할 수 없는 힘으로 작동했다. 노동자들의 고귀한 동료애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동료들의 증언은 회사가 사망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만들었다.

친마이마이 외사촌인 마모 씨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동료들과 함께 얘기 나누며 아웅민우 사망 당시의 상황과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유족의 입국과 위임을 적극 도왔다. 다른 통역자인 예린 씨와 함께 투쟁의 전체 과정과 쟁점을 유족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때 가장 벽에 부딪히는 지점이 언어 문제이며, 유족과의 신뢰 관계 형성이다. 마모 씨와 예린 씨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투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아내의 결단

잘 알려져 있듯 2021년 2월 미얀마에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얀마 국내 사정이 어떨지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지원모임도 예상했다. 그래서 입국도 위임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실제로도 시간이 꽤 걸렸다. 그래도 유족은 결단했다. 명예 회복과 동료들을 위한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수립되도록 대담하게 나섰다. 그리고 지원모임 소속 활동가들에 대해 편견 없이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투쟁의 정점은 추모문화제였다. 80여 명의 노동자, 활동가들이 모여 아웅민우를 추모하고, 회사를 규탄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투쟁에서 이런 추모제까지 열면서 힘을 모으는 일은 흔치 않았다. 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쉽지 않고, 유족과 동료들이 힘을 내어 회사와 정면으로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추모제는 친마이마이에게 큰 힘을 주었다. 고마워했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음을 심어줬다.

합의안의 의미와 이행 과정

커지는 비판 여론에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는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최근 몇 년간 5명 넘게 죽었다. 또 사망사고가 났기에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유족의 마음도 확고했고, 유족과 지원모임의 신뢰 역시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는 시간을 끌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할 거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회사는 유족과 지원모임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정주 노동자와 차별 없는 배·보상에 합의했다. 애초 SK에코플랜트는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관리책임자의 조문 및 사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원모임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대표이사가 공식 조문을 하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그렇게 만들었다.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와 LT삼보 대표이사는 장례식장에 와서 유족에게 사과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양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재됐다.

대표이사들의 장례식장 조문과 사과 장면이 담긴 뉴스타파 영상에 “언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는데 대표이사가 조문하고 사과했냐?”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라고 결코 가볍거나 하찮은 게 아니다.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똑같이 소중하며, 살아서 차별받았던 노동자가 죽음에서도 차별받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 진정성은 이후 그들의 행보로 더 가늠해 볼 일이지만, 원·하청 대표의 공식 사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또한 분명한 성과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선언적 수준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회사의 재발방지 대책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지원모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트라우마 치료 지원과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끌어낸 것도 의미가 있다.

아쉽고 부족했던 지점

지원모임은 유족 배·보상에 중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명시하려고 했다. 내용상으로는 관철했으나, 합의서 문구로 남겨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

회사와의 합의를 넘어 전체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짚지는 못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는 정부가 허가한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법에 명시된 정부의 지도·점검 의무가 있다.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는 해마다 1회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공사의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었다. 정부가 발주한 공사인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다녀갔을 뿐이다. 이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까지로 투쟁을 끌어올리진 못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가로막는다. 최초 3년 동안 사장의 동의 아래 3번만 바꿀 수 있고, 1년 10개월 동안의 재고용 기간에는 역시 사장의 동의 아래 2번만 바꿀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에, 노동자들은 아무리 위험해도 위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 권리가 없는 곳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아웅민우 님에게

한국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지워집니다. 살아 있는 동안 착취와 억압, 구조적 차별을 겪었던 노동자들이 죽어서도 '병사', '변사', '사인 불명',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어 허망하게 잊히는 절망을 겪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이주노동자가 언제 무엇으로 죽는지 어떠한 체계적 통계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타살이 반복되어도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죽다 보니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야만성, 정부의 실패, 기업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아내인 친마이마이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들은 회사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의 열악한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2인 1조 근무였다면 아웅민우 님이 죽지 않았을 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은 당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김포, 고양, 부천, 대구 등에서 많은 미얀마 노동자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친마이마이를 위로하고 조문했습니다. 그때 친마이마이 씨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다면서요.

아내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힘든 결단을 하고, 저희와 함께 투쟁하지 않았다면, 동료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당신의 죽음은 쉽게 잊힐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얼버무렸을 것이며, 회사는 동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안치실에 누워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비행기에 실려 미얀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친마이마이 씨는 돈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다고,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은 "살려 내라"는 말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방치한 회사 때문에, 회사를 감싸며 최소한의 관리 감독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당신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통합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웅민우 님의 죽음을 딛고, 이번 투쟁을 발판 삼아 한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싸우겠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APPENDIX

첨부자료

첨부1 공식 문서

첨부2 선전물(웹자보)

첨부3 투쟁 사진

첨부1

공식 문서

1)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2)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 중대재해 관련 교섭 요청의 건 공문

3)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4)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5)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보도자료

6)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입장문

7) SK에코플랜트 미얀마 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 사측 합의 보도자료

8)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LT삼보 대표이사 유족에 공식사과 및 유족의 고인 숙소, 사고 현장 방문 보도자료

9) 아웅민우 중대재해 관련 합의서

10) 아산 SK에코플랜트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천안지청 요구안 (260715)

11) 아산 SK에코플랜트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지원모임 제안

12) 사측 안전보건개선 계획

1)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 차별철폐네트워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8일(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010-8402-2853 박희은 사람이왔다 네트워크 집행위원 010-3555-7121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지난 7월 1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제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후 4시 경 37세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허가제(E-9비자) 이주노동자 민우씨는 미얀마에 부인과 자녀 셋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발주사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이며 고인은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적절한 안전대책과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이 부실함으로 인해 떨어짐, 끼임 등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은 참혹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라서 죽어서도 서러운 현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진정한 사과, 유가족의 입국과 체류 등 지원,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와 장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충분한 피해 보상 등을 제대로 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 7. 8(수) 오전 11시
○ 장소 : SK에코플랜트 앞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
○ 주최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 주요 순서 (사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집행위원)
: 추모 묵념
: 경과보고-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용덕 활동가
: 추모 및 규탄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하동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유가족 발언- 아모 님(고인 부인의 외사촌 언니)
: 노동안전보건단체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 인권단체 발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 네트워크 박희은 집행위원(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권미정 집행위원((사)김용균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선우스님
: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건,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지난 7월 1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제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후 4시 경 37세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용허가제(E-9비자) 이주노동자 민우씨는 미얀마에 부인과 자녀 셋을 두고 있고 2022년부터 한국에 와서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다. 가족을 위해 머나 먼 이국 땅에서 5년을 일하다 중대재해를 당했다. 가족들은 계속 통곡하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처절한 절규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와 사업주들은 여전히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하며 이주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발주사는 국가철도공단이고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이며 고인은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같은 현장에 이주노동자가 60여 명, 정주 노동자가 30-40명이라고 한다.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 롤러 점검과 같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 원칙 같은 것은 없었다. 손이 부러지고 손가락 다치고 하는 산재도 빈발했다. 평소에 안전교육도 별로 없었고 가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SK에코플랜트는 산재다발 사업장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고양 GTX A노선 제3공구, 안성지역 아파트 현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등에서 계속 중대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ESG 인권경영을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하청에 이주노동자에 컨베이어벨트라는 위험노동이 겹쳐 있는 이번 사건은 SK에코플랜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또한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주노동자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적절한 안전대책과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이 부실함으로 인해

떨어짐, 끼임 등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은 참혹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정부 정책, 이주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자본측의 행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 정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후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안전 보장하라'는 외침에 정부와 사업주는 답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 적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라서 죽어서도 서러운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 사측은 사건 덮기와 책임 축소에 급급하고 정부 당국도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사측의 진정어린 공식 사과, 유가족의 입국과 체류 등 지원,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와 장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충분한 피해 보상 등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참담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참사, SK에코플랜트는 공식 사과하라!**
-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 **유가족 입국과 체류지원을 제대로 하고 유가족 권리 보장하라!**
- **동료 이주노동자 트라우마 상담, 치료 보장하라!**
-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한 장례 보장하라!**
- **SK에코플랜트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라!**

2026년 7월 8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2)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 중대재해 관련 교섭 요청의 건 공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SejongChungnam Regional Council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B116(31450) / 전화(041) 549-4081,3 / 전송(041) 549-4082 / www.kctusc.org

문서번호 민주충남 2026 - 055

시행일자 2026. 07. 14.

수 신 SK에코플랜트(주) 대표이사

참 조 담당자

제 목 미얀마 노동자 고 아웅민우님 중대재해 관련 교섭 요청의 건

1. 조합원의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투쟁하는 민주노총!

2. 2026년 7월 1일(수) 16시경 귀사가 원도급인으로 시공에 참여한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 TBM구간 상선 12KM641 시점부(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인근)에서 미얀마 노동자 고 아웅민우님이 중대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3.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7월 6일 유족을 대표하여 고 아웅민우님의 배우자로부터 고 아웅민우님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원·하청 회사에 대한 일체의 요구과 협상,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귀사에 다음과 같이 고 아웅민우님의 중대재해 관련한 교섭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 교섭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16일(목) 15시, SK에코플랜트(주) 본사

문의 :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010-2305-4783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유희종

3)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Sejong-Chungnam Regional Council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223 B116호 / 전화 (041)549-4081,4083 / 팩스 (041)549-4082 / www.kctusc.org

☐ 발 신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문 의 : 010-7275-6065(이정호 미얀마노동자 중대재해 지원모임)

취재요청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3시

■ 장소 :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8시 30분

■ 장소 :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7월 1일, 아산의 KTX 복선화 현장에서 켄베이어벨트 점검 중 끼임 사고로 故 아웅민우님께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이미 많은 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내었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매일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7월 15일, 기간에 많은 어려움을 딛고 고인의 유족인 부인께서 한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유족의 위임을 받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유족의 입국과 함께 고인의 빈소를 천안의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15시 SK에코플랜트와 교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 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재발방지대책 철저

히 마련하라! 고인의 죽음에 대해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이에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추모문화제를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유족께서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이에 취재 시 고 아웅민우님의 사진 외에 유족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모든 사진은 꼭 모자이크를 통해 가려주시길 바라며, 유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해주세요.

[첨부1]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김다빈(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차장)

순서	발언자
1. 투쟁을 시작하며 교섭하기까지 경과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2. 고인의 죽음에 대한 유족의 심정과 입장	
3. 교섭에 임하며 입장과 요구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
4. 죽음의 주범,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 규탄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
5. 연이은 이주노동자 죽음,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박희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 네트워크

[첨부2]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민우 추모문화제 순서

○ 사회자 : 김다빈(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차장)

내용	발언
추모를 담은 민중의례	사회자
유족 말씀	
여는 발언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
추모발언1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
추모발언2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추모공연	지민주 동지
추모발언3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추모발언4	지몽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모발언5	류승권목사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추모발언6	권미정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집행위원
추모행동 - 공동 분향	사회자

※ 기자회견과 추모문화제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3시

○ 장소 :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 문의 : 010-7275-6065(이정호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지원모임)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김다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차장

발언1. 투쟁을 시작하며 교섭하기까지 경과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발언2. 고인의 죽음에 대한 유족의 심정과 입장 : 유족

발언3. 교섭에 임하며 입장과 요구 :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

발언4. 죽음의 주범,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 규탄 :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

발언5. 연이은 이주노동자 죽음,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SK에코플랜트와 정부가 책임지고 죽음의 이주화를 중단시켜라!

7월 1일, 아산의 KTX 복선화 현장에서 켄베이어벨트 점검 중 끼임 사고로 故 아웅민우님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아웅민우님 뿐인가? 6월 27일에는 전남의 대불산단에서 몽골 국적의 40대 여성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옮기던 대형 선박 배관에 복부를 강타당해 사망했고, 7월 11일에는 홍성의 한 축사에서 30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전국에서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이를 멈춰야 한다는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해야 하는가?

이미 아웅민우님의 죽음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매일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진행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하게 된 것은 아웅민우님의 죽음이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주로 가장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법에 보장된 안전조치, 안전교육, 2인 1조 근무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산재가 빈발해도 오히려 은폐되고 넘어가는 현장, 정주노동자에 비해 3배나 높은 산재사망 발생율은 이 결과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난관이다. 실제로 아웅민우님의 유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7월 15일에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어도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이용해서 사측은 사건 덮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더 이상 이 지독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결의이다. SK에코플랜트는 계속해서 산재사망사고를 내고 있는 산재다발 사업장이다. 이렇듯 SK에코플랜트가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아웅민우님의 유족까지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주노동자의 계속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의 위임을 받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를 중심으로 7월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고, 오늘 15시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이뤄지는 교섭에서 사측에게 고인과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엄중한 집행, 제대로 된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18시 30분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아웅민우님의 죽음에 SK에코플랜트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담아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이주화를 용납할 수 없다. 아웅민우님의 죽음에 대

한 모든 책임은 SK에코플랜트와 정부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죽음의 이주화를 끊어내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SK에코플랜트는 고인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SK에코플랜트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안전대책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
하나, SK에코플랜트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과 동종사고 예방조치 실시하라!
하나, 더 이상은 죽을 수 없다.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2026년 7월 16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5)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보도자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미얀마 노동자의 죽음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8시 30분

○ 장소 :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 문의 : 010-7275-6065(이정호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지원모임)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추모 문화제 순서]

○ 사회자 : 김다빈(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차장)

내용	발언
추모를 담은 민중의례	사회자
유족 말씀	친마이마이님(고인의 아내)
여는 발언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
추모발언1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추모발언2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
추모공연	지민주 동지
추모발언3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추모발언4	지몽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모발언5	류승권목사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추모발언6	권미정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집행위원
추모행동 - 공동 분향	사회자

※ 추모문화제에서 발언을 하신 분들 중 발언문이 있으신 분들의 발언문을 자료로 첨부합니다.

6)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입장문

입 장 문

지난 7월 1일 KTX 평택-오송 복선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故아웅민우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주) 및 하청업체인 LT삼보(주) 측(이하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고, 7월 17일 사과 및 배보상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대표이사들이 빈소를 방문해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와 충실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동료들에 대한 트라우마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임금,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을 보장하며, 사업장 이전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보상과 관련하여는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는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고인과 유족이 고국 미얀마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절차를 거쳐 미얀마로 모셔진 이후 현지에서의 장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이곳에서도 마지막으로 추모와 연대의 시간을 갖고자 7월 19일(일) 18시 빈소인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내 영결식장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의 공식적인 장례절차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고인을 고국으로 모시는 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빈소는 고인이 머무는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합의와 장례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고인의 목숨을 앗아간 위험천만한 현장에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아직 우리의 몫입니다. 사측이 끝까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 이후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이 투쟁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의 일인시위부터 추모문화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의 면담, 빈소를 차리고 유족과 함께한 모든 노력들로 인해 안타까움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고 고인과 가족을 고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현지사정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투쟁의 중심이 되었던 아웅민우님 배우자의 굳은 의지가 무엇보다 큰 힘이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故아웅민우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분노하고 투쟁을 지지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26. 7. 18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7) SK에코플랜트 미얀마 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 사측 합의 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Sejong-Chungnam Regional Council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223 B116호 / 전화 (041)549-4081,4083 / 팩스 (041)549-4082 / www.kctuscn.org

☐ 발 신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문 의 : 010-2305-4783(하동현 부본부장)

보도자료

SK에코플랜트 미얀마 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 사측 합의

■ 발신일: 2026년 7월 18일(토)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1. 7월 1일(수) KTX 복선화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점검 중 끼임 사고로 미얀마 노동자 故아웅민우 님이 사망했습니다. 7월 17일(금) 21시, 중대재해에 대해 유가족 측과 해당 공사의 원청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LT삼보(이하 '사측')가 합의했습니다.

2. 유족은 곧바로 한국에 들어오려 했으나,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입국이 쉽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수) 유족이 힘겹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일 단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추모문화제, 고용노동부 대응 등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유족에게 위임받고 종교단체, 노동안전단체 등 시민사회의 힘이 모여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위험의 이주화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4. 해당 합의는 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보상은 부속 합의서에 있으며, 부속 합의서는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합의했음을 밝힙니다.

*첨부 서류 1.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입장문
첨부서류 2. 본 합의서

8)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LT삼보 대표이사 유족에 공식사과 및 유족의 고인 숙소, 사고 현장 방문 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Sejong-Chungnam Regional Council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223 B116호 / 전화 (041)549-4081,4083 / 팩스 (041)549-4082 / www.kctusc.org

□ 발 신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문 의 : 010-2305-4783(하동현 부본부장)

보도자료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LT 삼보 대표이사 유족에 공식사과 및 유족의 고인 숙소, 사고 현장 방문

■ 발신일: 2026년 7월 18일(토)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1. 7월 18일(토) 15시,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이사와 LT삼보 대표이사가 미얀마 노동자 故아웅민우 님 산재사망 빈소(단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조문 후엔 유족,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과 잠시 이야길 나눴습니다.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이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LT삼보 대표이사는 "회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故아웅민우 님의 아내 친마이마이 씨는 "지금도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들은 제게 '거짓말하지 말고 돌아올 때 꼭 아빠랑 같이 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2. 7월 1일(수) KTX 선로 공사 중 미얀마 노동자 故아웅민우 님이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해당 공사의 원청이 SK에코플랜트, 하청이 LT삼보입니다. 7월 17일 21시, 유족과 사측은 합의했습니다. 해당 합의 내용 중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의 유족 대면 사과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이사의 빈소 방문은 합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3. 당일 오전, 故아웅민우 님의 아내 친마이마이 씨와 친척, 동료들은 고인이 사망한 공사 현장, 기숙사를 방문했습니다. 故아웅민우 님이 사망한 장소에서 유족이 직접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친마이마이 씨는 고인이 머물렀던 기숙사의 열악함과 현장의 문제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2인 1조만 이루어졌어도 안 죽었을 텐데 왜 안 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4. 故아웅민우님이 머물던 2인실 숙소는 침대 2개와 행거 2개만으로 가득차는 비좁은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은 사람이 작업하는 곳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컨베이어가 아무런 방호장치도 없이 노출되어 있었고, 미끄럽고 경사진 바닥에는 아무런 발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숙소와 사고현장의 환경은 유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9) 아웅민우 중대재해 관련 합의서

합의서

갑: 고AUNG MIN OO(아웅민우)의 배우자CHIN MAIMAI(친마이마이) (유족),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을: SK에코플랜트(주) (대표이사 김영식) / LT삼보(주) (대표이사 이상덕)

2026. 7. 1. 16:00경 SK에코플랜트(주)가 시공하던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KTX평택~오송2복선화 제2공구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중 끼임으로 사망한 고AUNG MIN OO(이하 '재해자'라고 함)씨의 사고건(이하 '본건 사고')과 관련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1. '을'은 본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아래 가. 내지 다.의 방식으로 유족에게 사과한다.

가.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와'LT삼보 대표이사'는 재해자 분향소를 방문하여 분향하고 유족에게 대면 사과한다.

나. 재해자에게 발생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SK에코플랜트(주)'와'LT삼보(주) 공동명의로 사과문을 3일간신문2곳(경향신문,한겨레신문)과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KLING)' 홈2곳에 게재하며,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을'이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여 7일 이내 게재한다.

다. 위'나' 호의 사과문을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의 본사 홈페이지에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을'이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여 7일 이내 게재한다.

2. '을'은 재발방지와 후속조치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한다.

가. '을'은 본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 및 본건 사고 발생 이후 수립한 재발방지대책과 향후 안전작업계획을 '갑'에게 제출한다.

나. '을'이 작성하는 향후 안전작업계획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형태 및 언어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다. 위 '가' 호부터 '나' 호까지의 대책을 노동청에 제출하기 전에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의견을 반영한다.

라. '을'은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는 등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시행할 프로그램의 정보, 통역사, 치료사에 대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 또한, '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이전을 원하는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로 일을 중단하게 된 재해자의 동료 노동자들이 평소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 경제적 손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3.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을'은 공동하여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본 합의서 첨부1.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위 금액과 별도로 '을'은 유족 체류 비용, 출입국 비용, 유해 송환 비용, 장례 등 행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실비정산)을 '갑'에게 지급한다.

4. 유족은 재해자에게 유족 이외의 상속인 및 청구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위3.항의 합의금은 유족 및 유족의 기타 이해관계인(직계비속, 직계혈족, 형제자매, 방계혈족, 친족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하 같다) 모두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3자가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 또는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족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5. '갑'은 본 합의로 '을'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금원 외 추가적인 금원 지급 및 기타 일체의 유·무형상의 이익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본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청구 이외의 '을'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6. '갑', '을'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든 정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정한 의사표시로써 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7. '갑', '을'은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4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8. 본 합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합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9. 본 합의는 합의서에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1: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내역서
첨부2: '갑' 여권 사본1부
첨부3: '갑' 가족관계증명서1부

2026년 7월 17일

Chin hnai mai

갑: 1. 고AUNG MIN OO(아웅민우)의 배우자CHIN MAIMAI(친마이마이)

2.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사무처장 직속 대행)
하 중 환

을: 1. SK에코플랜트(주) (대표이사 김영섭)

2. LT삼보(주) (대표이사 이상욱)

10) 아산 SK에코플랜트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천안지청 요구안 (260715)

1 유족 및 대리인의 사고조사 참여 보장

진상규명과 유족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 유족은 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조사와 수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유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직접적 사고 원인 외 안전교육 미실시, 산재은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임금체불 및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 동료노동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고 공사현장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방호장치의 미비는 물론, 안전교육 미실시, 산재은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됩니다.
- 또한 주 52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72시간까지 일하며 근로계약서는 편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단순히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그치지 않는 광범위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작업중지 해제절차에서 유족 및 대리인 의견 반영

사측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유족 및 대리인의 입장 반영하여 심의할 것

- 현재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여부와 중지범위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중지명령은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 사업주의 작업중지해제신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개선조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고현장의 작업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인 점, 노동조합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작업자 의견의 반영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유족과 대리인이 사업주의 작업중지해제신청의 내용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 본 사건의 원청 및 하청사 모두 상당한 규모의 건설회사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며, 그 사회적 책임 또한 작지 않습니다.
-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5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 25년 발표한 정부 산재예방대책에는 취약노동자로 이주노동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안전리더 육성, 모국어 기반 안전교육, VR체험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 천안지청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위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지청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터널굴진기 및 대형컨베이어 설비 운영실태 전수조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터널굴진기 및 대형컨베이어 설비 관련 동종사고 예방조치

- 정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국내에서 터널굴진기를 운영하는 업체는 7~10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장비이며, 이러한 장비들은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래에 신기술 및 신공법이 적용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노후발전소 해체작업 중 붕괴(발파해체공법), 세종안성고속도로 고가공사 중 붕괴(DR거더 런칭가설공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노동부의 당면과제가 된 상황이며, 터널굴진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편, 굴진기를 논외로 하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자체는 제철, 발전, 시멘트 등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중대재해 위험이 큰 대형컨베이어만이라도 전국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사측에 대한 지도

트라우마 관리, 동료노동자 고용 및 임금 보장에 대해 지도

-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 대응은 26년 1월 ‘가이드’에서 ‘지침’으로 격상되어 노동부 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 핵심적으로는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이 감독관이 사업장 및 노동자들에게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안지청이 지침에 따라 동료노동자 등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작업중지 및 트라우마 대응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아산 SK에코플랜트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지원모임 제안

▸ *본 문서는 재발방지·개선조치에 한정하여 작성.

■ Ⅰ 공학적 개선방안 (설비·구조)

1. 컨베이어 접근금지에 대한 공학적 개선방안

필요성: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보면 비정상적인 작업방식(가동 중 컨베이어에 접근하여 점검 및 정비)이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이 작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되어 있었음. 작업표준 개정·작업수칙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서 암암리에 위험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 공학적으로 차단할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

(1) A안: 전체 컨베이어에 박스형 덮개 설치, 점검 및 수리전용 이동식 발판 제작, 점검·수리가 필요한 부분엔 점검구 설치. 점검구엔 인터록을 설치하여 개방 시 자동정지.

(2) B안: 컨베이어 점검·정비용 발판·통행로를 설치, 해당 통행로 진입 게이트에 인터록 설치(개방 시 자동정지).

(3) 두 방안 모두 자동정지 후 재가동 절차를 엄격히 마련 — 작업자 혼자 해제 불가하도록 작업자+관리자 또는 작업자+오퍼레이터 2중키 방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에 따라 다음 4단계로 절차 명문화

(1) 운전정지

(2) 기동장치 잠금 + 작업자 및 관리자 열쇠 별도관리, 표지판 설치

(3)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

(4) 관련 작업자 전체 열쇠로 기동장치 잠금 해제

첨언

안전한 접근통로의 설계 단계 확보: 이번 사고지점은 하부가 곡면이라 통로·발판 자체가 없었고, 정상 통로(비계)는 멀리 떨어진 곳에 별도 설치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위험한 경로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B안(별도 통행로)을 “설계 단계부터 전 구간

점검·정비 접근로 확보를 필수요건화"하는 원칙으로 확장 제안.

2. 컨베이어 점검 및 정비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1) 벨트클리너, 바이브레이터 등 이물질로 인한 이상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2) 열화상 및 음향센서 등을 이용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3. 방호장치 임의해체 금지 및 정기감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에 근거해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정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현장에서 인터록·덮개가 설치 이후 무력화되는 사례가 흔하므로, 정기감사·불시점검 체계까지 함께 마련할 것.

■ II 관리적·제도적 개선방안

4. 정지 권한의 실질적 배분 및 작업중지권 보장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근거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 감지 시 즉시 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중지·대피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것을 명문화

(2) 정지 권한이 특정 직책자에게만 있는 현재의 운영방식 자체를 재검토 대상으로 명시

(3) 운전정지 요청이 가능한 통신장비 지급 및 운영 (7-2번과 연동)

5. 위험성평가 재실시(노동자 참여)

해당 공정(컨베이어 점검·정비) 및 전체 작업에 대해 노동자 참여 하에 위험성평가를 재실시. 설비 및 작업환경 변경 시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6. 원청(도급인) 이행감독 책임 명문화

「 산업안전보건법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근거해, 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을 원청(SK에코플랜트)이 지속적으로 감독할 책임을 명시.

■ III 법적 기준 준수사항

7. 기타 법적 기준 준수

(1) 컨베이어 전 구간 풀코드(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적정 장력 유지, 정기적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2) 터널을 밀폐공간으로 규정, 출입관리 및 통신장치 구비

(3) 컨베이어 하부 접근 차단조치

(4) 2인 1조 작업 의무화

참고

2인 1조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상 위험작업 2인 1조를 강제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근거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정부 지침, 김용균 사건 이후 제정) — 발주처가 국가철도공단(공공기관)이므로 이 지침이 직접 적용 대상. “법 위반”은 아니나 “정부 지침 위반 + 안전배려의무 해석상 문제”

■ IV 이주노동자 특화 안전조치 (신설)

8. 다국어 안전교육 실질화

(1) 모국어(미얀마어 등) 안전교육 자료 및 통역 배치

(2) 안전표지·경고문 다국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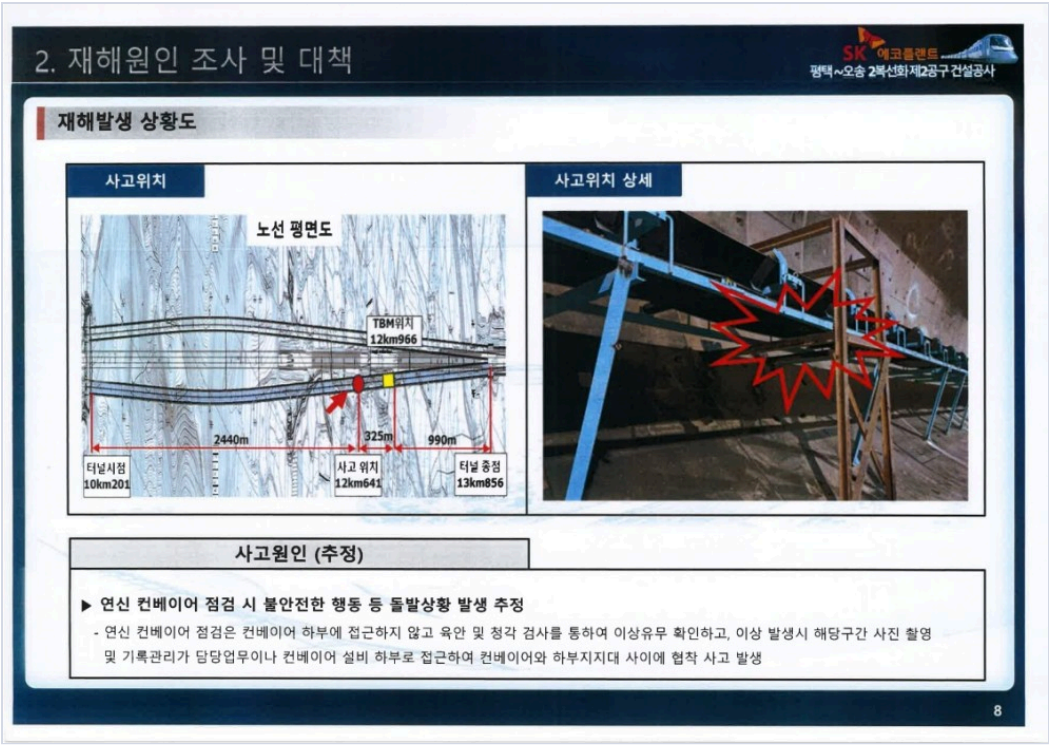
(3) 교육 후 이해도 확인 절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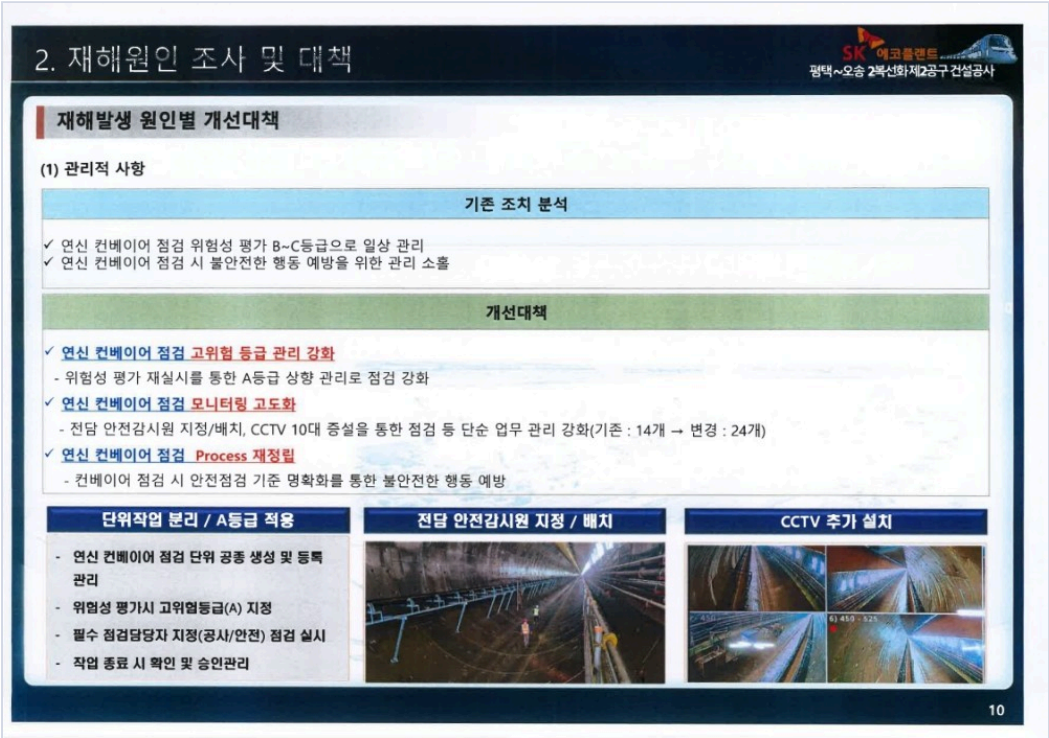
■ V 구조 안전

9. 컨베이어 붕괴 예방대책

과거 붕괴사례가 있으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 추가 설치 시 하중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정 설계 적용.

12) 사측 안전보건개선 계획





2.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SK 에코플랜트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구 분	기존 조치 분석	개선대책
관리적 사항	✓ 연신 컨베이어 점검 위험성 평가 B~C등급으로 일상 관리 ✓ 연신 컨베이어 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 소홀	✓ 연신 컨베이어 점검 고위험 등급으로 관리 기준 강화 - 위험성 평가 재실시를 통한 A등급 상향관리로 점검 강화 ✓ 연신 컨베이어 점검 모니터링 고도화 - 전담 안전감시원 지정을 통한 밀착관리 - CCTV 10대 증설을 통한 점검 등 단순 업무 관리 강화 (기존 : 14개 → 변경 : 24개) ✓ 연신 컨베이어 점검 Process 재정립 - 점검시 안전점검 기준 명확화를 통한 불안전한 행동 예방
기술적 사항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연신 컨베이어 벨트 하부 접근 ✓ 연신 컨베이어 구동부 및 TBM에 비상정지 장치 설치 완료 - 굴진에 따른 연장부 비상정지 Pull cord 설치 누락 구간 일부 발생	✓ 컨베이어 끼임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조치 강화 - 연신 컨베이어 측면 접근금지 방호울 설치 ✓ 비상정지 장치 설치 방법 개선 보완 - 굴진에 따른 비상정지 Pull cord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도르래 이용 굴진시 자동설치 ✓ 위험 장소 접근 시 IOT 경보 Alarm 시스템 적용을 통한 접근 통제 강화 - 연신 컨베이어 전 구간에 센스 감지를 통한 위험 장소 접근 시 자동경보 Alarm으로 접근 통제
교육적 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능력 및 민감도가 낮음 ✓ 연신 컨베이어 점검 절차 미 준수 ✓ 외국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채널 부족 - 언어장벽 등	✓ 눈높이에 맞는 맞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 분기 1회 통역관을 통한 교육실시로 RISK에 대한 민감도 고취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작업 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 투입 후 1주일 이내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을 통한 교육 및 소통으로 언어장벽 해소 -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실시간 다국어 AI 자동 번역 시스템 적용 - AI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9

2.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SK 에코플랜트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 원인별 개선대책

(2) 기술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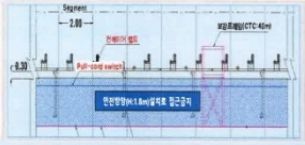
기존 조치 분석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연신 컨베이어 벨트 하부 접근
✓ 연신 컨베이어 구동부 및 TBM에 비상정지 장치 설치
- 굴진에 따른 연장부 비상정지 Pull cord 설치 누락 구간 일부 발생

개선대책

✓ 컨베이어 끼임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조치 강화
- 연신 컨베이어 측면 접근금지 방호울 설치(높이 : 1.8M, 길이 : 전구간)
✓ 비상정지 장치 설치 방법 개선 보완
- 굴진에 따른 Pull cord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도르래 이용 굴진시 자동설치)
✓ 위험 장소 접근 시 IOT 경보 Alarm 시스템 적용을 통한 접근 통제 강화
- 연신 컨베이어 전 구간에 센서 감지를 통한 위험 장소 접근 시 자동경보 Alarm으로 접근 통제

접근 금지 방호울 설치



비상정지 장치 Pull code



IOT 경보 시스템



11

2. 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SK 에코플랜트
평택~오송 2복선화제2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 원인별 개선대책

(3) 교육적 사항

기존 조치 분석
✓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능력 및 민감도가 낮음 ✓ 연신 컨베이어 점검 절차 미 준수 ✓ 외국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채널 부족 (언어장벽 등)

개선대책
✓ **눈높이에 맞는 맞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 분기 1회 통역관을 통한 교육실시로 Risk에 대한 민감도 고취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작업 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작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신규 투입 후 1주일이내 해당 관리감독자 실시 ✓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 통한 교육 및 소통으로 언어장벽 해소** -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실시간 다국어 AI 자동 번역 시스템 적용, - AI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통역사를 통한 안전교육



작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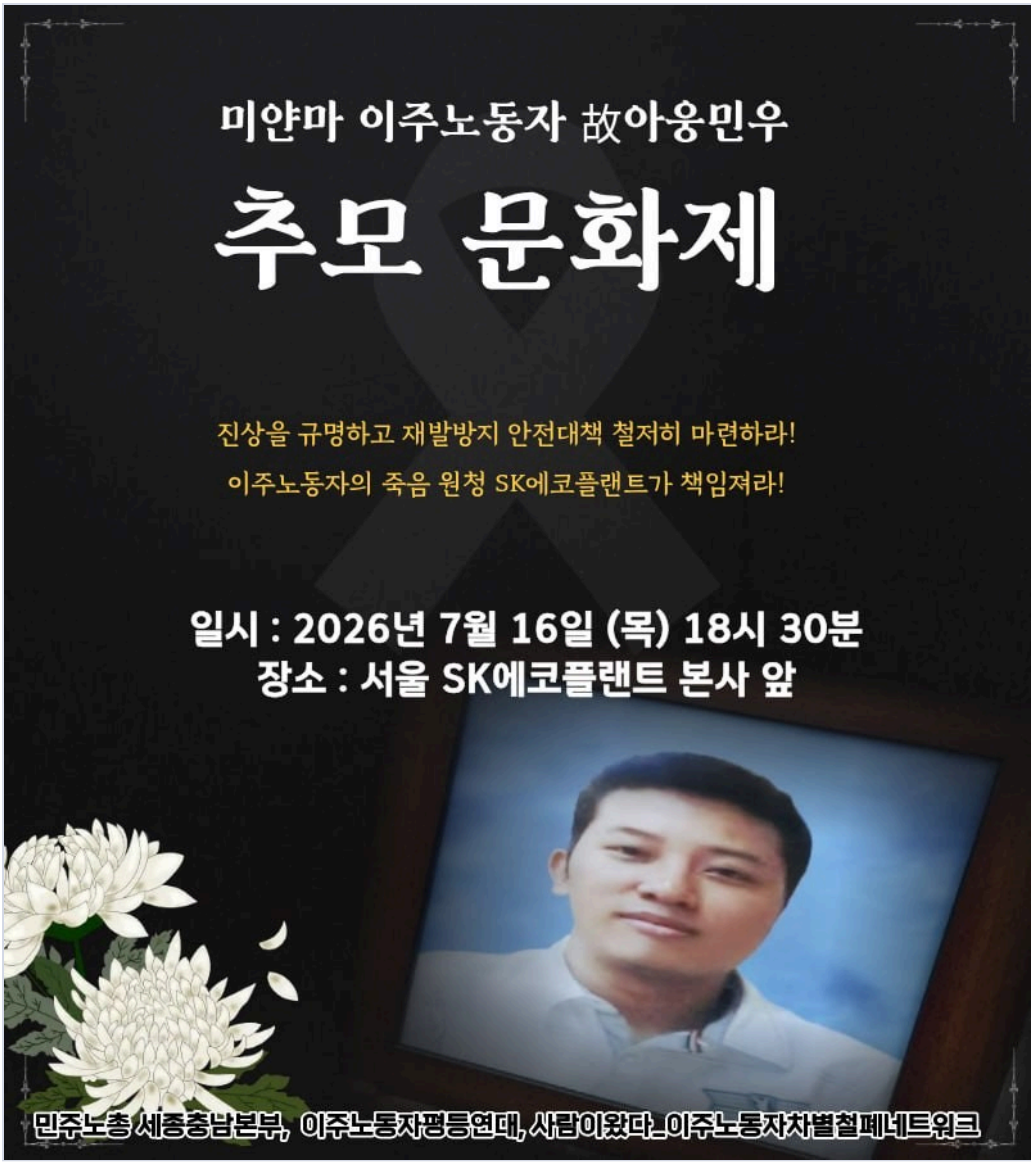


12

첨부2

선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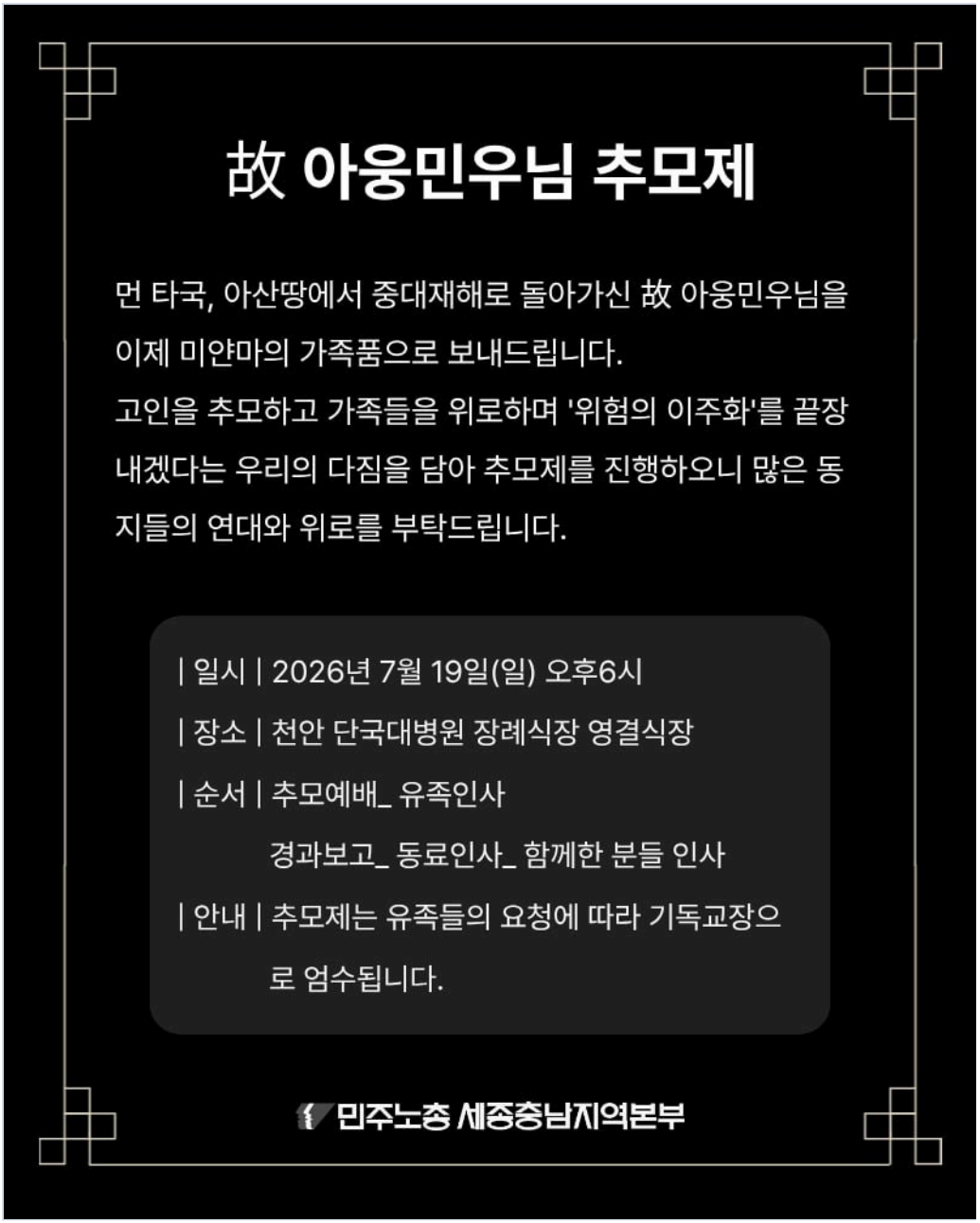
1)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웹자보
2) 미얀마 노동자 故아웅민우님 조문 안내 웹자보
3) 故 아웅민우님 추모제 웹자보
4) 유족 감사 인사 웹자보



1)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웹자보



2) 미얀마 노동자 故아웅민우님 조문 안내 웹자보



3) 故 아웅민우님 추모제 웹자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 남편은 7월 1일 SK에코플랜트 철도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시기에 와주시고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으로 사과를 받았고, 차별 없는 보상을 받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거대한 터널 안은 미끄럽고 무서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했습니다. 남편은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점검하다가 죽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멈출 수 있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목숨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면, 위험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여러면에서 도와주신 모든 담당자들, 각 위원회들, 대사관 관계자들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평등을 위해 여러 면에서 활동해 주는 모든 활동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는 미디어 역할을 많은 도움을 주신 기자 선생님들, 제 남편을 사랑하고 장례식장에 와서 고인 명복을 빌어주신 동료 형제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지내는 동안에 항상 위로해준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기도하며 미얀마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친절과 도와주신 것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늘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미얀마어 원본을 다 담을 수 없어 한글 번역만 담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미얀마 노동자 故아웅민우 아내 친마이마이 드림

4) 유족 감사 인사 웹자보

첨부3

투쟁 사진

2026년 7월 8일,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





2026년 7월 15일, 유족 입국 및 故 아웅민우 님 빈소 사진





2026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 사진



2026년 7월 16일,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2026년 7월 16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사진





2026년 7월 18일, 사고 현장 및 아웅민우 숙소 방문 사진





2026년 7월 18일, SK에코플랜트, LT삼보 대표이사 조문 사진





2026년 7월 19일, 아웅민우 추모제 사진







2026년 7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추모제 사진



